

北韓의 文化財保護關係法制

研究者 : 朴 相 哲(首席研究員)

金 昌 奎(先任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目 次

I. 序 論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II. 우리나라 「文化財保護法」의 沿革과 文化財의 概念 ..	13
1. 연 혜	13
2.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개념과 종류	16
(1) 문화재의 개념	16
(2) 문화재의 종류	17
III. 北韓의 文化財保護關係法制의 沿革과 主要內容	21
1. 연 혜	21
2. 북한정권수립 전후시기 :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등	22
3. 1970년대 주체사상의 등장시기 :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등	23
4. 1990년대 이후의 시기 : 「문화유물보호법」 등	24

IV. 北韓의 文化財保護關係法制의 分析	27
1.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의 구조	27
2. 「문화유물보호법」의 분석	28
(1) 「문화유물보호법」의 구성과 문화유물의 개념 및 종류	28
(2)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원리	29
(3)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립	30
(4)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30
(5)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31
(6) 문화유물의 복구개건	31
(7)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지도통제	31
3. 「역사유적과 유물보호에 관한 규정」의 성격	32
4.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의 내용	32
(1) 입법취지와 천연기념물의 개념	32
(2) 천연기념물의 조사등록	33
(3)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 및 이용	34
5.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의 내용	34
V. 南北韓 文化財保護關係法制의 比較 · 分析	37
1. 관계법제의 체계와 구조의 비교	37
2. 문화재의 개념과 종류의 비교	38
3. 입법취지의 비교	40
4. 관리체계의 비교	41

VI. 結 論 43

부록 I :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 49

부록 II : 북한소재 문화재 목록 90

〈표 목차〉

【 표 1 】 북한 문화재보호관계법제의 구조와 적용범위 27

【 표 2 】 「문화유물보호법」상 문화유물의 종류 29

【 표 3 】 남북한 문화재의 종류와 개념 39

【 표 4 】 남북한 문화재보호관계법제의 입법취지 40

【 표 5 】 북한소재 문화재 지정목록 44

I. 序論

1. 연구의 목적

문화재는 역사적 내지 예술적 가치에 따라 경중이 구별되지만, 무엇보다도 民族固有性과 人類歷史性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보호가치를 높게 인정받고 있다. 반만년 가까이 단일민족으로서 동질의 민족공동체를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는 민족의 역사적 자취 그 자체의 보존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의 분단체제는 정치·경제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제분단을, 사회·문화적으로 민족동질성의 분단을 야기하면서 남·북한간의 체제적·문화적 이질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민족문화의 이질화 현상은 우리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전제로 한 통일정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통일전후시기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간의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극복하여야 할 제일의 과제로 주목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북한의 문화정책¹⁾과 문화재에 대한 보호행태는 수령론 및 유일사상과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을 위한 우상화작업에 편도되어 고대의 유물발굴정책마저 '형식은 민족주의적으로, 내용은 사회주의적으로'라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북한의 역사인식²⁾은 단순히 역사해석차이의 차원

- 1) 북한의 문화정책은 과거 여타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을 정치와 분리시키지 않는 '사회주의 예술론'과 형식에 있어서의 민족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문화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사회주의예술론에 대한 고전적 저작으로는 F. Engels의 『Letter to Margaret Harkness』와 Marx & Engels의 『On Literature & Art』, 그리고 L. Kolakowski의 『Current of Marxism(박상철 역, 「콜라코프스키의 마르크스주의 I」, 훈계례, 1989, 280면 이하)』 등이 있다.
- 2) 북한의 역사서술방향과 인식체계에 대하여는 신형식, 『남북한 역사관의 비교』, 솔출판사, 1994, 15면~44면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을 넘어서서 남·북한간의 민족동질성 파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구소련의 붕괴 및 구동구권의 몰락과 탈이데올로기적 국제경쟁질서가 구축되자 북한의 민족정통성 확보를 위한 역사왜곡의 문화정책은 더욱 노골화되어 그동안 신화적 존재로 인식되어온단군이 그 아내의 유골과 함께 평양시 대백산 단군릉에서 발굴되었다는 주장을 펴면서³⁾ 1994년 단군릉 개축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⁴⁾ 북한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이외에도 문화재 중 명승지에 새겨지는 김일성-김정일 찬양문구를 ‘자연바위글발’이라고 하여 ‘기념비 서예의 한 구성분야’로 공식화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문화정책은 단순히 체제의 유지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향후 통일한국의 문화적 기반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에 그 심각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1940·50년대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냉전체제에서의 남북분단이 50여년간 지속되면서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구조적 이질화가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남·북한간의 화해·협력은 여건에 따라 타협과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만, 향후 통일한국의 문화적 기초를 제공할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과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 그리고 이에 대한 역사인식

3) 『조선화보』(1994년 1월호); 김일성의 교시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1993.12.10)」; 김석형, “주체의 방법론을 지침으로 하여 단군조선 역사를 체계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민주조선 1994.10.6., 3면; 류병홍, “단군 및 고조선 시기의 유적유물 발굴성과에 대하여”, 민주조선 1994.10.6., 3면; 강인숙, “고조선의 건국년대와 단군조선의 존재 기간”, 민주조선 1994.10.7., 4면; 장국종, “단군조선의 정치제도”, 민주조선 1994.10.7., 5면; 박영해, “단군릉의 개건과 그 의의”, 민주조선 1994.10.8., 6면 등을 참조.

4) 이러한 북한의 단군릉보도에 대하여 단군조선-고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북한정권이 계승하고 있음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것일 뿐 단군조선이 만주 요령부근과 후기에 대동강유역으로 이동했다는 기존의 학제정설을 과학적으로 반박, 고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단군과 단군조선에 관한 최근 북한연구학자의 연구총서로는 이형구, 『단군과 단군조선』, 실립터, 1995 등이 있다.

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공통된 노력이 없을 경우 자칫 統一論議의 空洞化를 초래할 수 있다. 비록 형식상의 통일합의에 의하여 재분열을 경험한 예멘에서의 예이지만, 당시 남북예멘은 통일논의의 중요안건으로서 '표준역사 교과서'의 발간에 많은 비중을 둔 바 있었다. 단일민족문화를 귀중한 역사적 소산으로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민족으로서의 일체감형성, 즉 민족동질성 회복이 통일논의와 남·북한간의 긴장해소 및 갈등해소에 정치·경제적 측면 못지 않게 중핵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인 3단계·3기조통일정책의 제1단계 중 화해·협력사기에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문 중 하나가 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문화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를 통한 통일문화정책의 단서를 제공하고자 현행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를 분석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단편적이지만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의 기존연구서로서는 1984년과 1986년 당시 국토통일원에 의하여 발간된 『북한의 문화재보존실태 및 교류방안』과 『북한의 문화재보존 및 활용실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서는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와 관련하여 1946년과 1948년에 제정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1946.4.29)」, 「보물, 고적, 천연기념물보존령 시행규칙(1946.4.29)」,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령 시행수속(1946.4.29)」,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1948)」,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1948.11.1)」, 「조선문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1948.11.1)」 등의 관계법제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1990년 전후에 개정되거나 새로이 제정된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1990)」,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1990)」, 「역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19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1994.4.7)」 등 현행 관계법제의 내용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의 현행 문화재보호관계법제의 분석외에 이와 관련된 교시, 정령 등을 참고하고자 하는데, 이는 북한법의 입법형식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⁵⁾ 북한법은 헌법과 우리의 법률을 내지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령의 형식을 빌어 제정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령, 교시 등이 중요한 法源으로서 규범력을 갖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북한법연구에 있어서 형식적 입법보다도 실질적 입법에 주목하지 않으면 중요한 법규를 간과할 수 있다. 특히, 북한법의 효력발생에 있어서 그 요건과 적용범위가 우리와 같이 정형화 되어있지 않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법제분석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에도 나타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유물보호법(1994)」과 「역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1992)」의 경우 그 적용범위가 중복되고, 경과규정이 불명확하며, 문화재 중 천연기념물과 명승지의 관리체계에 있어서 서로 일치되지 않는 법률용어가 자주 발견된다.

그리고 북한의 개별법제분석의 최종목적이 향후 각 분야별 통일법제를 제정할 때 이질적인 법률문화로 말미암아 통일전후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최소화 하는데 있으므로, 남북한법제의 비교고찰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북한법제분석의 문제점 내지 어려움이 상이한 법률체계와 구조로 인한 것외에 하나 더 추가되는데, 남북한의 동일분야의 법제가 적용범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치된다 할지라도 입법취지가 상반되는 경우에 북한법제분석의 유용성 확보가 반감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5) 북한의 다양한 입법형식으로 나타난 법규정들의 제정주체를 살펴보면,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령을 포함한 법령은 최고인민회의 내지 주석이, 정령은 중앙인민회의에서, 결정은 정무원에서, 지시 등은 여러 국가기관에서 그 입법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양한 입법형식이라기 보다는 입법의 형식과 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 엄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규약이 헌법보다 우선하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국가의 특수한 입법과정이기도 하다.

하는 반면에,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는 민족적 자부심외에 계급의식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둘으로써 북한문화재보호관계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문화재보호와 관련한 통일법제의 입법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북한의 문화재보호법제와 관련하여 통일법제의 방향모색은 우리나라의 북한소재 문화재 보호정책의 실태와 이의 개선을 위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통일지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⁶⁾.

-
- 6) 북한법제분석의 목적은 종국적으로 향후 통일전후시기에 본격화 될 통일법제의 마련에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는 바, 분석하고자 하는 법령의 성격에 따라 통일법제의 방향모색이 달라질 수 있다.

북한법제분석은 대체적으로 남·북한 관계법제 상호간의 이질성을 부각하여 그 일체감·형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본 보고서의 문화재보호법제와 같이 우리나라 관계법제가 통일지향성을 갖도록 정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는 「문화재보호」에 있어서 북한의 관계법제가 반통일적인 입법취지를 갖고 있는 한,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사전에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서 우리나라의 관계법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II. 우리나라 「文化財保護法」의

沿革과 文化財의 概念

1. 연혁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1월 10일에 법률 제961호로 제정·공포된 이래로 제6차의 일부개정을 거쳐 “문화재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제도를 확립하고, 동산문화재의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1982년 12월 31일에 법률 제3644호로 전문개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제6차의 일부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법률 제961호)」이 제정·공포, 시행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법령으로서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1916년 7월에 제정된 「古墳及遺物保存規則(조선총독부령 제52호)」이 최초의 法源으로 존재하였고, 이후 1933년 8월 9일에 제정된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조선총독부령 제6호)」과 동년 12월 5일의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施行規則(조선총독부령 제136호)」이 있었다.⁷⁾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연혁과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종전의 조선보물고분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년 8월 9일, 조선총독부령 제6호)을 폐지하고,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1962년 1월 10일에 신규 제정되었으며, i) 문교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ii)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의 4종으로 구분하되 중요한 것은 지정문화재로

7) 김종염, “개정문화재보호법 해설”, 『문화재 제16호』, 문화재관리국, 1983, 164면.

8) 「문화재보호법」의 연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편), 『대한민국법률연혁집 제13권』, 1994, 241~242-54면을 참조.

지정하도록 하며, iii)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할 때에는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iv)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지정문화재를 일반에게 공개할 의무를 지게하며, v)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기타 물건에 포장된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하게 하며,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vi) 국유에 속하는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는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vii) 문화재에 관한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과하도록 하는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그후, 1963년 2월 9일에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문화재위원회의 각분과위원회의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는 한편, 국유문화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1차 일부개정(법률 제1265호), 1963년 12월 5일에 “종전의 구황실재산중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숙명학원, 재단법인진명학원과 재단법인양정학원에 그 재산의 일부를 기여할 수 있으나 구황족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베풀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귀국하게 될 구황족인 李垠氏와 그 배우자에게도 구황족재산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2차 일부개정(법률 제1462호), 1963년 12월 16일에 “개정헌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헌법하의 권리구조에 부응”하기 위한 제3차 일부개정(법률 제1583호), 1965년 6월 30일에 “종래 준용되어 오던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이 폐지(1965.6.30)됨으로써 문화재관리국소관 잡종재산처분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제4차 일부개정(법률 제1701호), 1970년 8월 10일에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별칙 등을 강화하여 문화재관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5차 일부개정(법률 제2233호), 1973년 2월 5일에 “관람료의 징수 ·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의 매매 등 영업의 허가 조항을 개정하고,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발굴 · 보상금

·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존조치 · 토지수용법의 준용 · 도굴 등의 죄에 관한 벌칙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6차 일부개정(법률 제2468호)이 있었다.

또한 “문화재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동산문화재의 등록제 도를 폐지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 · 보완한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1982년 12월 31일에 전문개정(법률 제3644호)이 있었는데, i)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시 ·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ii) 천연기념물에 관한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동물의 서식지 · 번식지 · 도래지와 식물의 자생지자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iii) 사적 · 중요민속자료 등 기타 국가지정민속문화재에 대하여도 문화공보부장관이 멸실 등의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iv) 국보 · 보물의 모사 · 모조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악보 · 대본제작행위 등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v)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vi)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 · 결격사유 · 준수사항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의 규정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1982년의 문화재보호법은 그후 1984년 12월 31일에 “현행법은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제작된지 50년 이상인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문화공보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동산문화재는 매년 수백만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1970년부터 이 등록제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등록된 동산문화재는 약 27만점에 불과하여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소유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여 문화재의 노출을 기피하고 은닉함으로써 동산문화재의 거래가 음성화 하는 등 오히려 그 보존이나 관리하는데 있어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므로 비현실적인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은닉된 문화재를 활발히 전시공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그 유통을 양성화하여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실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1차 일부개정(법률 제3787호), 1987년 11월

28일에 물품관리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제2차 일부개정(법률 제3947호), 1988년 12월 26일에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의 폐지에 따른 제3차 일부개정(법률 제4031호), 1989년 12월 30일에 정부조직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제4차 일부개정(법률 제4183호), 1993년 3월 6일에 정부조직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제5차 일부개정(법률 제4541호), 1995년 1월 5일에 “매장문화재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발굴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직접 발굴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할 수 있게 하고, 그 발굴소요경비를 종전에는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제6차 일부개정(법률 제4884호)이 있었다.

2.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개념과 종류

(1) 문화재의 개념

문화재 개념의 사용은 산업혁명이후 영국에서 자원개발의 활발한 진행에 따른 자연의 파괴와 역사적 문화유산의 손상·파괴 및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의 자연보호 및 문화재보호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것에서 비롯되었다.⁹⁾ 따라서 문화재 개념은 근대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근대 문화정책적 개념이며, 현대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그 개념의 범위에 대하여는 그 나라의 전통이나 역사적 배경 또는 문화정책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9) 김삼봉, “동산문화재관리제도의 비교고찰”, 『문화재 제12호』, 문화재관리국, 1979, 1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1950년대까지는 문화재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되지 않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또는 유적·유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1961년 10월 2일에 각령 제181조에 근거한 문화재관리국직제의 공포로 문화재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1962년 1월 10일에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문화재라는 용어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정의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상·예술상·학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및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피한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문화재의 종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종류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면서 지정문화재의 종류로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①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가)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보물·국보」와 시·도가 지정하는 「유형문화재·문화재자료」가 있다.

(나)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있다.

(다) 기념물

기념물은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총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학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함)·식물(자생지를 포함함)·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과 시·도가 지정하는 「기념물·문화재자료」가 있다.

(라) 민속자료

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피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중요민속자료」와 시·도가 지정하는 「민속자료·문화재자료」가 있다.

【참고】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개념의 변화

1982년 이전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정의에 있어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구분하여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및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피한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신안 앞바다에서 인양된 문화재와 같이 외국의 문화재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31일에 전문개정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3644호) 이후로는 “우리나라”를 삭제하였고, 기념물의 정의에 있어서도 1982년 이전의 문화재보호법은 “폐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총 기타 사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이라고 규정하였지만(구법 제2조) 1982년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이후로는 이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①사적지

로서 역사상 · 학술상 가치가 큰 것, ②경승지로서 학술상 · 관상상 가치가 큰 것, ③동물 · 식물 · 광물 ·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동물과 식물의 경우에는 단순히 동물과 식물 자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의 서식지 · 번식지 · 도래지와 식물의 자생지를 문화재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② 국가지정문화재, 시 ·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가)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보물 · 국보,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의 문화재를 말한다. 여기에서 i) 보물은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고, 국보는 보물중에서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ii) 중요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고,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중요문화재의 보유자(보유재단을 포함)를 인정하여야 하며,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외에 추가로 인정 할 만한 자가 있을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다. iii)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은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iv) 중요민속자료는 민속자료중 중요한 것을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나) 시 · 도지정문화재

시 · 도지정문화재는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관할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다) 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관할지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참고】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개념의 변화

1982년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이전에는 문화재를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지정문화재이외의 문화재”로 규정하여 지정문화재의 개념을 국가지정문화재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1982년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이후에는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게 되었는데, 구법상 「지방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명칭을 바꾼 것은 각 시·도마다 지정한 문화재가 어느 시·도의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앞에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법상의 「지정문화재이외의 문화재」를 「문화재자료」로 변경한 이유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용어로서의 「지정이외의 문화재」는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문화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구법상의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이외의 문화재로 특별히 지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만을 의미하는 것과 비추어 보아 용어해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아울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문화재」보다 문화적 가치가 적은 「지정문화재이외의 문화재」를 문화공보부장관이 고시·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 「문화재자료」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지정관리체계를 문화재적 가치의 경중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III. 北韓의 文化財保護關係法制의 沿革과 主要內容

1. 연혁

1994년 4월 7일에 제정된 북한의 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이하 「문화유물보호법」이라 함)은 1993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최고인민회의결정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¹⁰⁾라는 김일성 당시 주석의 교시를 입법화 한 것으로서 이 교시와 북한헌법¹¹⁾ 제41조¹²⁾는 그 상위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문화유물보호법」은 북한의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최근에 제정된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1990년),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1990년), 「역사유적과 유물보호에 관한 규정」(1992년) 등의 기본법에 해당되며, 문화유물보호에 관한 기본원리와 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법제정은 1992년 북한헌법의 전면적인 개정 내지 수정¹³⁾에 따른 체제수호의 문화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의 문화재

-
- 10)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서 채택되기 하루 전날인 1993년 12월 9일에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대의원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의제로 상정되었다.
 -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
 - 12) 제4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 13)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헌법개정과 입법동향(북한법제분석 94-2)』(1994)을 참조.

보호관계 입법의 연혁은 북한의 정권수립 이전부터 찾을 수 있다. 북한의 정권수립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1946. 4.29)」, 「보물·고적·천연기념물 보존령 시행규칙(1946.4.29)」,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시행수속(1946.4.29)」 등과 1948년의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국과 소련사이의 이념분쟁에서 주체사상의 등장이라는 이념적 변화에 주력하던 북한은 민족문화유산의 계승과 발굴에 전력을 다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은 김일성 당시 수상이 1970년 2월 17일에 '과학교육및문화예술부문일꾼협의회'에서 "문화예술을 창조하는데서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을 결합시킨다는 것은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조선사람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문화예술형식에 혁명적인 내용, 다시 말하여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창조하는 투쟁…… 같은 내용을 담는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라고 연설하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북한의 문화재보호관련법제와 정책은 크게 북한정권의 수립전후 시기, 1970년대 주체사상의 등장시기, 1990년대 이후의 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2. 북한정권수립 전후시기 :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등

북한의 사회주의정권은 1948년 9월 9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이전인 1946년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김일성 위원장과 강량 육 서기장의 이름으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의 보존령」과 그 시행 규칙 및 시행수속을 제정한 반면에, 1962년의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1933년의 조선총독부령 제6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

14) 김일성,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북한), 1976, 5면.

령」을 의용하여 온 우리와 크게 대조·비교된다.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은 건조물, 전적, 고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패총, 고적, 사지, 요지, 경승토지, 동식물, 지질, 광물 등 학술연구의 자료가 될만한 것을 위원장이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산문화재인 보물 또는 보물에 준할만한 역사적·예술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물건을 외국 또는 타도로 수출·반출·파괴·훼손·은닉함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내각결정 제100호로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문화유물에 관한 관리체계를 갖추었는데, 내각 직속의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를 설치하여 종래 문화선전성에서 관장하던 역사박물관에 대한 관리지도사업과 북조선고적보존위원회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고,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에 대한 사업을 각도 및 평양특별시 인민위원회에 이관하여 그 보존을 내무상에게 책임지우고 있다(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1948.11.1)).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동위원회의 사업에 참가하는 교수에게 교과외 사업을 면제하도록 각 국립대학 총장 및 학장에게 특별조치함으로써 문화유물조사 및 보존사업에 대한 북한정권의 집착을 알 수 있다.

3. 1970년대 주체사상의 등장시기 : 「민족문화유산 계승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등

1972년의 북한헌법의 제정동기는 그들 나름대로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사회주의 발전의 초기형태인 인민민주주의원리가 더이상 맞지 않게 되고, 그 가운데 중국과 소련사이의 이념분쟁과 '주체사상'의 등장이라는 이념적 변화를 겪었으면서 민족고유의 문화유산에 대한 북한의 문화구조는 김일성 우상문화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북한 전역에 김일성동상, 혁명전적

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관 등 각종 기념관이 세워지고 많은 문화유물이 김일성 숭배 및 사상교양장소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중요문건으로서 김일성 당시 수상의 연설문인 「민족문화유산 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0.2.17)」는 북한의 문화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예고하고 있다. 즉, 북한문화구조 중 민족문화유산의 사회주의적 변형에 김일성 우상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주입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김일성 당시 수상은 이 문건에서 “… 우리는 민족문화유산과 지난 날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하여 언제나 계급적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대하여야 하며 그것들을 우리 혁명의 이익에 맞게 평가하고 처리하여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 즉 문화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72년 북한헌법의 제37조에 ‘…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고 명문화 되어 1970·80년대의 북한문화정책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4. 1990년대 이후의 시기 : 「문화유물보호법」 등

1992년의 북한헌법은 구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국제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고, 대외정책의 이념과 원칙을 수정하여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며, 김정일에로의 후계권력체제의 기반과 권력의 승계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권력구조를 부분적으로 다원화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문화정책이 김정일에 의하여 주도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북한의 민족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 북한헌법의 개정이 자구표현에 있어서 전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헌법 제37조와 신헌법 제41조가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단군릉의 발굴을 그동안 북한의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사업을 전국가적, 전사회적 동원체제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 1993년 김일성 당시 주석은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 할 데 대하여(1993.12.10)」라는 교시에서 "...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유산보전관리와 관련하여 법·규정을 새로 제정실시할 ..." 것을 정무원에 위임하기에 이르른다.

이에 1994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문화유물보호법」을 채택하였는데, 동법은 문화유물을 보존·계승발전시켜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데 그 입법목적을 두고 있다.

전문 총6장 53개조로 구성된 「민족유물보호법」은 1990년에 제정된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과 1992년의 「역사유적과 유물보호에 관한 규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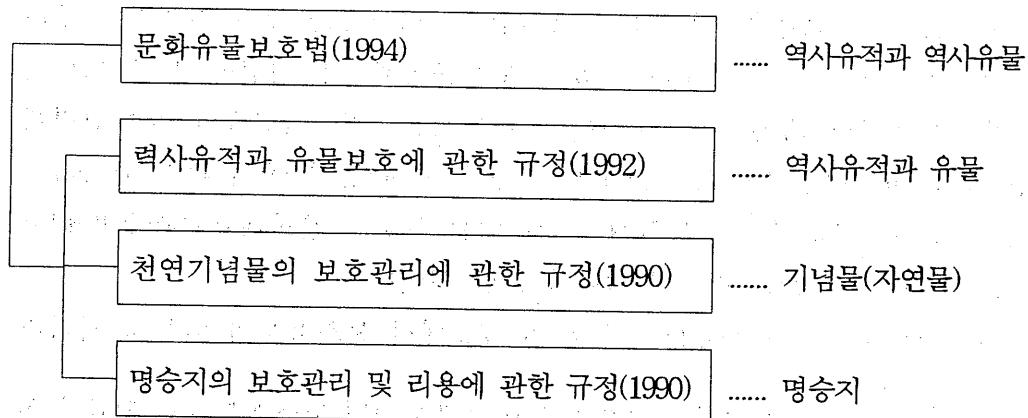
IV. 北韓의 文化財保護關係法制의 分析

1.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의 구조

북한의 정권수립 전후시기에 제정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46)은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의 연혁이 되어 왔으나 1990년에 들어서면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그리고 역사유적 및 역사유물에 대해 각각의 규정을 두면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단군릉의 발굴을 계기로 김일성 당시 주석의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93.12.10)」라는 교시의 정신을 입법화 한 「문화유물보호법」이 제정되어 북한의 문화재보호적 관심은 역사유적 및 역사유물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문화유물보호법」은 그 법체계와 내용상 문화재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과 기본원리를 강조하면서 그 관리체계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관계법제의 기본법적 성격과 신법우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서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의 구조와 적용범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 】 북한 문화재보호관계법제의 구조와 적용범위



2. 「문화유물보호법」의 분석

(1) 「문화유물보호법」의 구성과 문화유물의 개념 및 종류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은 동법 제1조에서 “문화유물보호관리에 있어서 제도와 질서를 염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태로 보전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주는데 이 바지할 것”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제1장 기본(제1조 내지 제9조), 제2장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제10조 내지 제15조),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제16조 내지 제21조), 제4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제22조 내지 제35조), 제5장 문화유물의 복구개건(제36조 내지 제42조), 제6장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지도통제(제43조 내지 제53조) 등 총6장 5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총칙-국가지정문화재-매장문화재-국가문화재에 관한 특례-시·도지정문화재-보적-별적 등 문화재 종류별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과 대조적인 법구조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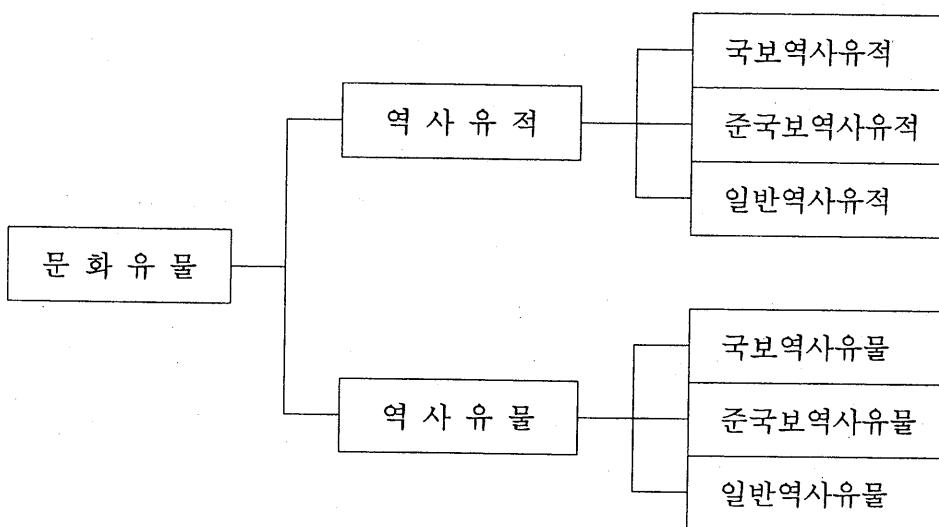
이러한 차이점외에도 입법형식에 있어서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제2조에서 문화유물의 범위로서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역사유적」과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공예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골같은 「역사유물」로 한정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상 규정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 등을 제외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과 명승지에 관하여서는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과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무형문화재에 관하여는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¹⁵⁾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을 동법 제17조에서 문화유물의 역사적 의의와

15) 북한의 문화유물관련법제를 고찰할 경우, 우리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부록 참조).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국보급, 준국보급, 일반 문화유물로 세분하고 있다. 다음에서 「문화유물보호법」상 문화유물의 개념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 】 「문화유물보호법」상 문화유물의 종류



(2)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원리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보호관리를 전국가적, 전사회적 차원의 사업으로 천명하고 이의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위하여 문화유물담당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문화유물보호관리의 최종목적을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이용’하는 데 두고 있다. 이는 북한의 문화유물보호관리의 뚜렷한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애국주의 교양¹⁶⁾이라는 인민의 집단적 에너르기를 고양시키는 체

16) 애국주의 교양 :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조선말대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92, 1742면).

제유지의 도구성을 시사하고 있다.

문화유물의 소유에 있어서 國有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문화유물 중 역사유물의 경우 상속받은 것에 한하여 개인의 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3)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문화유물의 발굴은 반드시 문화유물보존기관(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과 도·시·군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과 해당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으며, 기관·기업소·단체·공민이 문화유물을 발견할 때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조사확인 및 대책수립없이 건설공사 같은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문화유물 중 역사유물의 수집사업 또한 문화유물보존기관만이 할 수 있으며, 은행 및 수매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수매과정에서 발견한 역사유물을 문화유물보존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치에 따라 국가는 특별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4)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 있어서 제일의 중요사업으로서 신속·정확한 평가와 등록을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문화유물은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 일반문화유물로 평가·분류하는데 국보 및 준국보문화유물의 평가는 정무원이, 일반문화유물의 평가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에 있어서는 국보 및 준국보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일반문화유물은 지방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이 등록된 문화유물을 폐기, 이관하거나 이름을 고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또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5)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는 문화유물보존기관과 역사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하며, 정무원은 역사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하여야 하고, 진귀한 역사유물은 모조품을 만들어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물을 촬영하거나 벽화무덤을 참관하려고 할 경우에는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시회를 목적으로 역사유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은 정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보문화유물의 경우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 등을 만들어 영구보존하게 하고 있다.

(6) 문화유물의 복구개건

문화유물의 복구개건은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문화유물을 재현하는 사업으로서 역사유적의 경우 복구개건할 역사유적의 형성안을 만들어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역사유적은 문화유물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물이 없는 역사유물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할 수 있는데, 이는 중앙문화유물보존기관만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지도통제

문화유물보호사업의 통일적인 지도를 위하여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전국의 문화유물보호관리정형을 장악하고,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기관,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안의 문화유물보존관리에 대한 분담을 조직하고 계획적인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보호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노력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문화유물

보호부문의 설비, 자재, 자금, 노력의 예산전용을 염금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물에 대한 파손·분실·은닉·관리소홀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원상복구·손해배상·몰수·행정처분·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문화유물이 집중되어 있거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보존하기 위하여 박물관과 민속촌을 설립할 때는 정무원의 승인을 요하며 문화유물을 통한 교양사업과 출판보도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3. 「역사유적과 유물보호에 관한 규정」의 성격

1992년에 제정된 「역사유적과 유물보호에 관한 규정」은 총4장(일반규정-역사유적과 유물의 발굴, 평가 및 등록사업-역사유적과 유물의 복구 및 보존관리-역사유적과 유물에 대한 감독통제기관의 임무와 권한)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1994년의 「문화유물보호법」의 목적이나 적용범위와 비교할 때 대동소이하며, 「문화유물보호법」에 의하여 대체된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 두 법령간의 내용상의 차이점은 역사유적과 역사유물에 대한 개념의 구분이 「문화유물보호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과 문화유물의 보호·관리체계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점에 불과하다.

4.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의 내용

(1) 입법취지와 천연기념물의 개념

1990년에 제정된 북한의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은 총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들을 잘 보호관리하고 이용함으로써 나라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혀 주며 그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연물 가운데서 오직 우

리나라에만 있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및 풍치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기념물로 보호하게 되여있는 동식물, 화석, 광천, 동굴을 비롯한 자연물을 천연기념물로 규정짓고 천연기념물보호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이 하고, 천연기념물보호관리사업은 '천연기념물관리기관'으로서 도·시·군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도천연기념물관리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도록 하고 있다.

(2) 천연기념물의 조사등록

① 조 사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광범한 대중을 활동하여 나라의 자연환경과 자연물을 조사하여 천연기념물대상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에 대한 조사, 견학, 지질탐사 및 개발 과정에 우리나라의 고유특산종의 식물, 약초, 우리나라의 특산종의 동굴, 국제적 보호대상의 동물, 다른 나라에는 전멸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동물, 다른 나라에는 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희귀한 동물 등의 동식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원상태로 두고 천연기념물관리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땅껍데기의 땅오름과 가라앉기, 학술 및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는 동굴, 폭포, 호수, 기묘하게 생긴 바위와 절벽, 섬, 분화구 등 지리적 대상의 자연물을 보았을 때와 온천, 약수, 진귀한 화석, 광물 등 지질분야의 자연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지방에서 새로 찾아낸 자연물들에 대한 자료를 대상별로 작성하여 해당 상급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② 등 록

문화보존총국은 지방에서 새로 찾은 천연기념물대상들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천연기념물로 등록하여야 하며 문화보존총국은 천연기념물이 자연적 및 기타 요인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을 때 그것을 천

연기념물에서 제외하는 책무를 갖는다.

(3)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 및 이용

① 보호관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등에 있는 천연기념물과 광천, 집집승들의 보호관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고,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천연기념물들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구역을 과학적으로 정하며,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에 대한 자연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항상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할 책무를 갖는다. 그리고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의 특성에 맞게 표식주와 설명문판을 세우며,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의 자연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이용

천연기념물을 참관·이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관·견학할 때 천연기념물관리기관에 천연기념물에 대한 해설강의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참관·견학 등 여러 계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자연보호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5.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의 내용

1990년에 제정된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은 총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라의 명승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이용함으로써 우리 당의 자연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고, 또한 나라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근로자들

과 청소년학생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그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이 하고, 명승지의 보호관리는 ‘명승지관리기관’으로서 도·시·군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와 도명승지 및 천연기념물관리소,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명승지에는 김일성·김정일 우상문구가 마구 새겨져 「명승지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연풍치와 문화정서생활의 보장에 반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명승지의 김일성-김정일 찬양문구는 오히려 ‘자연바위 글발’이라고 불리워지고 ‘기념비 서예의 한 구성분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김일성-김정일 찬양문구가 가장 많이 새겨져 있는 곳은 금강산과 묘향산 일대인데 금강산 지역에는 등산로인 만물산·구룡연·삼일포 등 인근 60여곳에, 묘향산에는 상원동·만폭동 등 25개 곳에 새겨져 있다.¹⁷⁾

17) 내외통신, 제959호 F3.

V. 南北韓 文化財保護關係法制의 比較·分析

1. 관계법제의 체계와 구조의 비교

북한법은 제정주체나 효력발생요건 내지 그 범위가 우리와 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며, 특정법의 연혁을 살펴보게 되면 해당 법령의 제정이 없는 입법부재의 상태에서도 유사한 규범력이 발휘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는 사회주의법의 대체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북한법의 존재형식의 독자성에서 연유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북한의 관계법제의 비교·고찰은 북한법제를 자체분석하는 것보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다분하다. 특히 북한법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문으로서 규제의 범위가 동일한 법분야라고 할지라도 그 운영이 우리와 다를 경우에는 올바른 분석은 더욱 어려워진다. 남북한 문화재보호관계법제의 경우에도 문화재의 개념정의부터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서 남북한 관계법제의 체계와 구조가 매우 이질적이다.

남북한 문화재보호관계법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보호법(법률 제4884호)」, 북한의 경우 「문화유물보호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그 범위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문화재에 적용되어 명실공히 문화재보호관계법제로서 단일법형태를 띠고 있으며, 문화재의 종류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법률 제4781호)」, 「전통건조물보존법(법률 제4541호)」, 「독립기념관법(법률 제4541호)」, 「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4718호)」 등의 관계법령들이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의 경우 문화재에 관한 단일법 형태가 아닌 문화재의 종류별로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다. 역사유적과 역사유물에 관하여는 「문화유물보호법(1994)」과 「역사유물과 유물보호에 관한 규정(1992)」, 자연물 등의 천연기념물에 관하여는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

에 관한 규정(1990)」, 명승지에 관하여는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해당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관련법제별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물보호법」이 문화유물의 개념을 역사유적과 역사유물에 한정하고 있지만, 그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다른 규정과 다를 경우 이 법이 최근의 법령으로서 우선적 효력을 갖고 있다.

2. 문화재의 개념과 종류의 비교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종류는 크게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지정기관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 유형문화재는 국보와 보물로, 무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로, 기념물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민속자료는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 유형문화재는 ○○시·도 유형문화재와 ○○도 문화재자료로, 무형문화재는 ○○시·도 무형문화재로, 기념물은 ○○시·도 기념물과 ○○시·도 문화재자료로, 민속자료는 ○○시·도 민속자료와 ○○시·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는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어 구분하고 있는데, 「문화유물보호법」에서 문화유물로서 역사유적과 역사유물을 규정하고,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국보문화유물·준국보문화유물·일반문화유물로 구분하고, 천연기념물과 명승지는 각각의 개별 법령을 두고 있어서 북한의 문화재는 크게 문화유물·천연기념물·명승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북한의 경우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상의 남북한의 문화재의 종류와 개념을 비교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표 3 】 남북한 문화재의 종류와 개념

대한민국		북한	
구분	개념	구분	개념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문화유물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텁,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것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역사유물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학적 유골 같은 것
기념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총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학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처·번식지·도래지 등을 포함함)·식물(자생지를 포함함)·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천연기념물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및 풍치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기념물로 보호하게 되여있는 동식물, 화석, 광천, 동굴을 비롯한 자연물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피한 것	명승지	우리나라의 자연풍치

위의 도표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와 민속자료는 북한의 문화유물에 해당되고, 기념물은 북한의 천연기념물과 명승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무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와 보호가 북한에서는 없음을 알 수 있다.

3. 입법취지의 비교

남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의 입법취지를 비교·고찰할 경우 이질성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는 최종적으로 북한정권의 체제유지와 인민의 집단적 에너르기의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의 입법목적의 비교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표 4 】 남북한 문화재보호관계법제의 입법취지

구 분	관계법제	입 법 취 지
대 한 민 국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북 한	문화유물보호법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대로 보전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함
	역사유적과 유 물보존에 관한 규정	지난 날 우리 인민들이 이룩하여 놓은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역사유적과 유물들을 잘 보존관리함으로서 근로자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계급의식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도록 함

구 분	관계법제	입 법 취 지
북 한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	천연기념물을 잘 보호관리하고 리용함으로써 나라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그들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함
	명승지의 보호 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	나라의 명승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리용함으로써 우리 당의 자연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内外에 널리 선전하고, 또한 나라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그들의 문화정서생 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함

4. 관리체계의 비교

남·북한의 문화재에 대한 관리체계는 국가관리의 엄격함이라는 점에서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¹⁸⁾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의 지정, 관리 및 보호, 공개, 조사 등에 있어서 문화체육부의 통일적인 관리체계가 형성되어 있고, 북한도 문화재의 발굴 및 수집, 평가와 등록, 보존관리, 복구개선, 지도 등에 있어서 문화예술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체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문화재의 지정·해제,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복구 및 수리의 명령, 문화재의 매입·발굴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문화재위원회」와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에 규정된 「문화유물담당관」제도의 비교는 남북한의 문화재관리체계의 고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의 「문화유물담당관」에 대한 해설자료가 부재한 탓으로 구체적인 비교·분석이 불가능하다.

18) 이는 문화재 보호관리의 특성상 각국의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유럽과 일본 및 대만의 문화재관리체계에 관하여는 김종염, “외국의 문화관리제도”, 『문화재 제17호』, 문화재관리국, 1984와 장경호, “덴마크 문화재의 보존과 그 활용”, 『문화재 제13호』, 문화재관리국, 1980을 참조.

VI. 結 論

통일한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은 단기적 으로 남북한 문화교류와 북한사회의 개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문화적 동 질성을 확대하여 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갈등없는 남·북한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 등을 분석한 결과 그 입법취지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부문이 왜곡되고 훼손될 우려가 다분하며, 어떠한 의미에서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는 이를 제도화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도 있다. 북한 헌법 제 41조에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목적을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변용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고 있는 점은 이를 보다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단선적인 역사인식과 목적에 일대 전환이 없는 한 문화유물왜곡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법제적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문화재보호관계법을 제정하거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방법이 거론될 수 있으나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 등의 내용과 현행 북한의 문화정책을 감안할 때 이상적인 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화재보호관계 통일법제의 기본방향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관련법제를 통일지향적으로 정비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 소재 문화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법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1971년 3월 1일에 당시 문화공보부가 문화재위원회와 각계의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월남인사들과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실존이 확실하고 역사적 가치가 큰 52종의 북한소재 문화재를 지정한 것이 그 전부이다.

【 표 5 】 북한소재 문화재 지정목록

(1971.3.1 문화공보부)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1	개성남대문	경기도 개성시 북안동
2	관음사대웅전	경기도 개풍군 영북면
3	심원사보광전	황해도 황주군 구락면 덕양리
4	성불사옹진전	황해도 황주군 주남면 정방리
5	대동문	평안남도 평양시 이내동 1-6
6	평양보통문	평안남도 평양시 서성동 5-1
7	부벽루	평안남도 평양시 경산동
8	용천서문외석당	평안북도 용화군 동하면 사홍리 산7
9	용천다라니석당	평안북도 용화군 동상면 동부동 9
10	영통사지5층석탑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현북리
11	영통사지동삼층석탑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현북리
12	영통사지서삼층석탑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현북리
13	해주석빙고	황해도 해주시 상동 53-1
14	해주다라니석당	황해도 해주시 남욱동 47-34
15	광조사진찰대사보월승공탑비	황해도 해주시 금산면 냉동리
16	현화사비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현화리 904
17	영통사지대각국사비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현화리 198
18	용천구읍내석불입상	평안북도 용천군 동상면 성서동 산8
19	용천구읍내석수	평안북도 용천군 동상면 성서동 산8
20	해주백제청풍비	황해도 해주시 광석동 80
21	개성연복사종	경기도 개성시 북안동 남대문루
22	평양동종	평안북도 평양시 이문동 1
23	북청여진문자비	함경남도 북청군 속진면 창성리 림47
24	개성첨성대	경기도 개성시 만월동 81-1
25	개성선죽교	경기도 개성시 원동 262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26	개성만월대	경기도 개성시 만월동 71-8
27	봉산후류토성	황해도 봉산군 통성면 문장리
28	용강안성리대총	평안남도 용강군 지운면 안성리 242
29	용강안성리쌍영총	평안남도 용강군 지운면 안성리 242
30	용강안성리수렵총	평안남도 용강군 대별면 매산리 287
31	용강신덕리폐총	평안남도 용강군 신용면 신덕리 519
32	용강신덕리감신풍	평안남도 용강군 신용면 신덕리 428-2
33	강서간석리연화총	평안남도 강서군 보림면 간성리 547
34	강서삼묘리고분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삼묘리 934
35	순천북창리태왕지신총	평안남도 순천군 북창면 북창리 241
36	낙랑토성지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면 토성리~조왕리
37	성천동명사관지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면 상부리
38	안변가학루	함경남도 안변군 학성면 총문리
39	양원사	평안북도 안주군 동주면 봉명동
40	학림리5층석탑	황해도 장연군 전택면 현학리 557
41	자혜사5층석탑	황해도 신천군 남부면 청양리 196
42	대방태수장무이묘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 구룡리 1059-1
43	대성산성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 자족리
44	전안학궁지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 북사리
45	대화궁지	평안남도 대동군 부산면 남궁리 30
46	태천농오리산성	평안북도 태천군 서성면 산성리~상귀리
47	홍원천계봉산성	함경남도 홍원군 학천면 용능리 산19
48	홍원성령석성	함경남도 홍원군 학천면 신상리
49	홍원부면동고분군	함경남도 홍원군 학천면 풍호리
50	북청청해토성	함경남도 북청군 청해면 토성리 973
51	옹기송평동폐총 및 주민지	함경북도 옹기군 옹기읍 송평동
52	용성농포동폐총	함경북도 경성군 용성면 농포동

이외에 북한소재 문화재를 그 가치 등급에 따라 유형문화재(국보급 50점, 보물급 53점, 사적 73점), 명승지(17점), 천연기념물(314점) 등으로 분류한 화보집이 있지만¹⁹⁾, 이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규적 차원의 조치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북한과는 달리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문화재를 통합, 규정한 단일법형태로서 매우 체계적이지만 북한소재 문화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민족문화보존과 인류문화에 기여하는 입법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심의사항(「문화재보호법」제3조 참조)에 북한소재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심의하는 내용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일한국을 향한 문화적 측면의 노력에 해당될 것이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왜곡된 문화정책에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부록 I :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 49

○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49
○ 보물, 고적, 천연기념물 보존령 시행규칙	51
○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시행수속	57
○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62
○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	64
○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	65
○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 개요	67
○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 개요	70
○ 역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개요	74
○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7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83

부록 II : 북한소재 문화재 목록 90

[부록 I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1946.4.29)

제1조 건조물, 전적, 고적,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물건으로써 특히 역사의 증징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될 만한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략칭함)은 이를 보물로 지정할 수 있음. 패총, 고적, 사지, 요지 기타의 유적, 경승토지 또는 동식물, 지질, 광물 기타 학술연구의 자료가 될 만한 물건으로써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위원장이 이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음.

제2조 보물 또는 보물에 준할 만한 역사적 미술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한 물건을 외국 또는 타도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파괴·훼손·은닉함을 금지함. 단, 타도로 이출함에 있어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을 때는 예외로 함.

제3조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되는 행위를 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함.

제4조 위원장은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고 필요한 시설을 명령할 수 있음.

전항의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각 도인민위원회 예산중에서 그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제5조 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위원장의 허가없이는 발굴 또는 현상을 변경하지 못함.

전항의 유적을 발견한 자는 위원장에게 보고할 것.

제6조 공익상 기타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은

천연기념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제7조 위원장은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임자를 선정하여 조사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

제8조 위원장은 본령에 규정한 그 직권의 일부를 도민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제9조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제10조 하기 각항에 해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5조 제1항에 위반한 자

제11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의로 기피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물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물건을 제공한 자는 2천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서기장 강량욱

보물, 고적, 천연기념물 보존령 시행규칙 (1946.4.29)

제1조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또는 그의 해제의 고시는 좌기 사항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공보(이하 공보라 칭함)에 게재할 것.

1.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지정번호, 명칭 及 수량
2. 소재지 及 지역
3. 소유자의 성명 及 주소(공공단체에 있어서는 그의 명칭 及 사무소 소재지)

제2조 보존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때에는 금지 또는 제한할 사항을 공보로써 고시하고 당해 물체 또는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혹은 점유자에게 통지할 것.

제3조 제1조, 제2조에 있어서 당해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등으로 특별한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지 않을 수 있음.

제4조 보물, 고적, 명승 及 천연기념물에 관하여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 그 대장을 비치함.

제5조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자는 보존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려 할 때 미리 그 뜻을 관계 물건 또는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할 것.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승락이 없으면 邸內에 入內하지 못함.

위촉을 받은자가 보존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려 할 때는 별지의 양식의 증표를 휴대할 것.

(양식)

表 面

裏 面

第 號	年 月 日
寶物, 古蹟, 名勝, 天然記念物	
調査員票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印
寫眞 職名 姓名	

제6조 보물의 수출 또는 이출의 허가를 받으려 할 때에는 소유자에 있어서는 죄기 사항을 구비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칭함)에 신청할 것.

1. 보물의 지정번호, 명칭 及 수량
2. 수출 또는 이출을 필요로 하는 리유
3. 수출 또는 이출의 기간
4. 수출항 또는 이출지
5. 수출목표지 또는 이출목표지
6. 속장 及 운반의 방법
7. 수출 또는 이출기간중에 있어서의 보관방법
8. 보험방법
9. 탑탁, 모사, 모조 등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이 有하거든 그 사항 전항에 게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을 것.

제7조 보물을 수출 또는 이출한 자가 당해 보물의 수입 또는 이입이 끝났을 때는 7일 이내에 그 뜻을 위원장에게 계출할 것.

제8조 보존령 제3조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죄기 사항을 구기하여 위원장에게 신청할 것.

1.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지정번호, 명칭 及 수량
2.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보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리유
3. 현상 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관한 설계도 及 사진 그리고 공사담당자의 성명 及 주소(공공단체에 있어서는 그의 명칭 及 주사무소 소재지)
4. 건조물류로서 그 위치를 변경하려 하면 그 이전처

5. 착수 及 준공의 예정기간
 6. 토지의 소유자인 것 또는 토지의 소유자 及 관계인의 승락을 얻었다는 증서
전항에 게재한 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을 것.
- 제9조 보존령 제3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其 행위를 종료하였을 때는 실시상황서, 도면 及 사진, 그리고 매장물의 類를 발견하였을 때는 其 상황을 명기하여 1개월이내에 그 뜻을 위원장에게 계출할 것.
- 제10조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공공단체에 있어서는 그 명칭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는 당해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지정번호, 명칭 及 수량을 구기하여 변경된 날부터 2주일이내에 위원장에게 계출할 것.
전항의 변경이 있었을 때는 신소유자, 신관리자 또는 신점유자로 부터 당해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지정번호, 명칭 及 수량을 구기하여 변경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계출할 것.
- 제11조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멸실 또는 훼손 또는 그 현상에 변경이 有할 때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부터 그 리유, 실황 및 당해 보물의 지정번호, 명칭 及 수량을 발견한 날로 부터 7일이내에 그 내용을 도위원장에게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계출할 것.
- 제12조 위원장은 도인민위원회에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위촉할 수 있음.
전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도인민위원회의 부담으로 함.
전항의 비용에 대하여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예산범위내로 其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으려 할 때는 당해 도인민위원회는 其 소유 及 당해 년도관리비예산 及 당해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지정번호, 명칭 及 수량을 구기하여 위원장에게 신청할 것.
- 제13조 사찰이 其 소유에 속하는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을 유지 수리할 수 없을 때는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하 도인민위원장이라 칭함)은 이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 있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도인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찰이외의 자의 소유인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을 준용함.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 할 때 쪽기 사항을 구기하여 도인민위원장에게 신청할 것.

1.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지정번호, 명칭 及 수량
2. 보조를 필요로 하는 리유
3. 유지수리에 관한 공사비예산, 설계서, 계획도 及 사진
4. 착수 及 준공 예정시일

제14조 제12조제3항, 전조 제1항 及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시설 또는 유지수리에 관하여는 도인민위원장이 이를 감독함.

제15조 제12조제3항 또는 제1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는 도인민위원장의 지시를 좇아서 이를 관리할 것.

제16조 제12조제3항 또는 제1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가 설계서 또는 착수준공의 예정시간을 변경하려 할 때는 그 리유及 변경한 설계서 及 설계도를 구기하여 도인민위원장의 허가를 받을 것. 도인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설계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제17조 제12조제3항 또는 제1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당해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시설 또는 유지수리의 공사를 종료하였을 때는 실시서, 도면, 사진 及 공사비 정산서 및 매장물류를 발견하였을 때는 其 상황을 구기하여 2개월 이내에 그 것을 도인민위원회를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계출할 것.

만일 그 시설 또는 유지수리를 함에 있어서 정부의 회계년도내에 그 공사를 종료치 못한 때는 준공에 이를 동안까지 매 회계년도공사의 수지계산及 공사의 진행상황을 회계년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도인민위원회를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계출할 것.

제18조 제12조제3항 또는 제1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쪽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도인민위원장은 보조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교부를 정지 혹은 폐지하고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1. 보존령 혹은 본령 또는 이에 의거하여 행사하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공사준공의 가능이 없을 때

3. 사기 기타 부정수단을 가지고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제19조 제6조, 제7조, 제11조의 규정에는 국유에 속한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에 대하여서는 국가로서 할 때는 이를 적용치 않음.

제20조 사찰은 其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 보물로 지정을 받았을 때 其 관리
방법을 정하여 지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를 도민위원회에게 계출할
것.

제21조 사찰이 그 소유에 속한 보물을 해당 사찰외에 반출하려 할 때는 좌
기 사항을 구기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을 것.

1. 보물의 지정번호, 명칭 及 수량

2. 반출을 필요로 하는 리유

3. 반출기간

4. 반출처

5. 하송, 운반의 방법

6. 반출기간중의 보관방법

전항에 게시한 것을 변경하려 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을 것.

제22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보물을 당해 사찰내에 반입하였
을 때는 사찰은 7일이내에 그 뜻을 위원장에게 계출할 것.

제23조 사찰이 其 소유에 속하는 보물을 탑탁, 모사 혹은 모조하거나 또는
탑탁, 모사 혹은 모조를 승인하려 할 때는 좌기 사항을 구기하여 위원장
의 허가를 받을 것.

1. 보물의 지정번호, 명칭 及 수량

2. 탑탁, 모사 또는 모조를 필요로 하는 리유

3. 탑탁, 모사 또는 모조의 기간

4. 탑탁, 모사 또는 모조의 방법

5. 탑탁, 모사 또는 모조에 종사하는자의 성명 及 주소

제24조 패총, 고분, 사찰, 요지 기타의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
고 기타 현상을 변경하려 하면 좌기 사항을 구기하여 위원장에게 신청할
것.

1. 유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종류, 명칭, 수량 及 소재지

2. 발굴 기타 현상변경의 필요리유

3. 발굴 기타 현상변경에 관한 설계서 及 계획도

4. 착수 及 준공의 예정시간

5. 토지의 소유자인 것 또는 토지소유자 及 관계인의 승락을 받은 증서

6. 유래 또는 전설

전항에 게시하 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을 것.

제25조 폐총, 고분, 사지, 요지 기타 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한 자는 죄기 사항을 구기하여 곧 위원장에게 제출할 것.

1. 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종류 及 소재지

2. 구조 及 현상

3. 유래 또는 전설

4. 발견 년 월 일

제26조 사찰이 죄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1천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리방법에 의하지 않고 보물을 관리하였을 때

2. 태만으로 인하여 보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하였을 때

3. 허가없이 보물을 사찰외에 반출할 때

4. 허가없이 보물을 탑탁, 모사 혹은 모조하거나 그 행위를 승인하였을 때

제27조 제7조,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않은 자는 과료에 처함.

제28조 본령의 벌칙을 적용할자가 사찰인 때는 주지 또는 사찰의 사무취급자에 이를 적용함.

〈부 칙〉

본령은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보존령 시행일로부터 이를 적용함.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시행수속

(1946.4.29)

제1조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하 도위원장이라 칭함)은 보물, 고적, 명승 또 는 천연기념물 보존령(이하 보존령이라 칭함)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 의 필요가 有하다고 인정하는 물건이 있을 때는 죄기 사항을 구기하여 지체없이 그것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칭함)에 보고할 것.

가. 건조물류

1. 명칭, 수량 及 소재지
2. 소유자, 관리자 及 점유자의 성명 及 주소(공공단체에 있어서는 명칭 及 주사무소 소재지)
3. 구조형식 及 대소
4. 현상
5. 연혁
6.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참고사항

나. 물건류

1. 명칭, 종류 及 수량
2. 소유자, 관리자 及 점유자의 성명 及 주소(공공단체에 있어서는 그 명칭 及 주사무소 소재지)
3. 품질, 형상 及 대소
4. 현상
5. 작자 及 전래
6.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참고사항

다. 유적 또는 경승지

1. 명칭 及 소재지
2. 지역의 번지, 지목 及 지적
3. 소유자, 관리자 及 점유자의 성명 及 주소(공공단체에 있어서는 그 명칭 及 주사무소 소재지)
4. 공작물 기타 건물의 명칭, 수량, 품질, 형상, 구조형식 及 대소
5. 현상
6. 유래 또는 전설
7.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기타 참고사항

라. 동물, 식물, 지질, 광물 기타 학술연구가 될 물건

1. 명칭, 수량 及 소재지
2. 지역의 번지, 지목 及 지적
3. 소유자, 관리자 及 점유자의 성명 及 주소(공공단체에 있어서는 그 명칭 及 주사무소 소재지)
4. 품질, 형상, 구조 及 대소
5. 현상
6.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참고되는 사항

제2조 도인민위원회가 보존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의 행위의 금지 혹은 제한을 하거나 또한 필요한 시설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죄기 사항을 구기하여 지체없이 그것을 위원장에게 보고할 것.

1.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지정번호, 명칭 及 수량
2. 금지 또는 제한할 사항
3. 시설의 개요 及 경비보조의 필요유무

제3조 도인민위원회는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보존령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칭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교부를 정지 혹은 폐지하거나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반환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其 리유를 구기하여 지체 없이 그것을 위원장에게 보고할 것.

제4조 위원장은 국유에 속하는 물건 또는 토지를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써 지정하거나 또는 其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 당해 물건 또는 토지의 보관자에 통지함.

제5조 죄기 경우에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

1. 其 보관에 있는 보물을 수출 또는 이출하려 할 때
2. 국유의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현상을 변경하고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려할 때
3. 其 보관에 있는 보물을 탑탁, 모사 혹은 모조하거나 또는 이 행위를 승인하려 할 때

제6조 죄기 경우에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소속 각 기관의 장은 위원장에 보고할 것.

1. 전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이출한 보물을 수입 또는 이입하였을 때
2. 전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종료되었을 때
3. 其 보관에 있는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 멸실 혹은 훼손하거나 또는 其 현상, 소재지명, 소재지의 지번·지목·지적에 변경이 있을 때
4.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을 취득하였을 때

제7조 도인민위원장은 보물인 건조물이 있는 사찰에 기지 또는 가람에 관하여 전법, 포교법요집행 及 승니거주의 목적이외의 사용을 허가하려 할 때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

제8조 죄기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其 요항을 도위원장에게 통지함.

1. 국유에 속한 물건 또는 토지를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서 지정 또는 其의 해제를 하였을 때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였을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
4. 보존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당해 책임인에 명하였을 때

제9조 죄기 경우에 있어서는 도인민위원장은 其 사항을 소관 보안서장에 통지할 것.

1. 보존령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당해 물건 또는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달할 때
2. 보존령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규칙 제21조及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령을 전달할 때.
3.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명령 또는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명령 또는 관리방법의 지정을 전달할 때,
4. 규칙 제7조, 제11조, 제20조, 제22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
5.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

제10조 보안서에 있어서 매장물로서 석기, 골각기, 토기, 도자기, 耳거리, 목거리, 대금구, 匀玉, 도검, 마구, 경감, 고전(古錢), 불상, 동종, 사리합, 석탑, 석비, 묘지, 회화, 조각, 와박 기타 학술기예 또는 고고자료에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발견의 계출을 받았을 때 내무서장은 죄기 사항을 구기하여 지체없이 그것을 도인민위원회를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할 것.

1. 종류 及 수량
2. 구조 及 품질
3. 형상
4. 발견의 장소
5. 발견의 사정
6. 발견의 년 월 일 及 계출 년 월 일
7. 발견한 토지의 소유자 及 주소(공동단체에 있어서는 그의 명칭과 주사무소 소재지)
8. 발견자의 성명 及 전설

제11조 전조의 보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심사케 하여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자료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뜻을 해당 보안서장에 통지함.

전항의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時는 위원장은 당해 보안서장에 대하여 현품송부를 명할 수 있음.

제12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자료에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된 물건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은 그것을 위원장에게 송부

할 것.

제13조 물수, 환부불능 기타의 리유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한 석기, 골각기, 토기, 도자기, 耳거리, 목거리, 대금구, 匀玉, 도검, 마구, 경감, 고전, 불상, 동종, 사리함, 석탑, 석비, 묘지, 회화, 조각, 와박 기타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자료에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검찰소장 또는 보안서장에 있어서 其 개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其 통지를 기다려서 이를 처분할 것.

참 고

○○도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보존회규약

1. 본 회는 ○○도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보존회라 칭함.
2. 본 회는 ○○도의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에 대한 사항을 조사심의함.
3. 본 회사무소는 ○○도인민위원회 교육부내에 置함.
4. 본 회는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하며 또 자문에 응하며 매년 1회 이상 각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상태를 순찰하여 보존에 유감이 없기를 기함.
5. 본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약간명, 위원 20인이내로 조직함.
6. 회장은 본 회의 사무를 총관리함.
7.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본 회의 사무를 대리함.
8.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서무회계 등의 사무를 담임함.
9. 회장은 ○○도인민위원회 교육부장으로 함.
10. 부회장은 斯界의 권위자를 임명함.
11. 간사는 ○○도인민위원회 교육부 교육과장 及 과원을 임명함.
12. 위원은 斯界의 전문가를 임명함.
13. 부회장, 간사, 위원의 임명권은 회장에게 있음
14. 총회, 위원회는 필요에 응하여 회장이 수시 소집하되 반수이상의 회합을 요함.
단, 긴급한 경우에는 此限에 부재함.
15. 결의는 출석인원의 반수 이상의 찬동을 요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其 결의권을 회장에게 부여함.
16.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까지로 함.
17. 본 회 일체경비는 ○○도인민위원회 교육부에서 지출함.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1948)

제1조 역사상의 기념물 및 학술연구상의 귀중한 자료가 되는 유적, 건조물, 회화, 공예품, 전적 등 유물은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락칭한다)에서 이를 보존관리한다.

전항의 유물중 위원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은 이를 고적 또는 보물로서 지정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2조 전조에 해당하는 출토품 및 기타 일체 새발견품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

전항의 유물을 발견한 자는 2일이내에 이를 위원회 또는 소관 지방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유물발견의 보고를 받은 지방인민위원회는 그 유물을 보관하여 2일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자에 대하여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제3조 제1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물은 임의로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한다.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국외전람회 등에 일시 출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제4조 제1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물은 이를 파괴, 훼손 또는 은익함을 금한다.

제5조 고적, 보물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제1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물의 빌굴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제1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물로서 개인이 소유할 경우에 이를 전당 또

는 양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제1조제1항의 유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보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적당한 보관방법을 지시하여 그 보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 (1948.11.1)

우리 민족문화의 방대한 유물과 유적을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하며 이를 후손에게 전하도록 영구히 보존 관리하는 사업을 일층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내각 직속으로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로서 다음의 부서를 둔다.
 - (1) 원시사 및 고고학부
 - (2) 미술 및 건축부
 - (3) 민속학부
 - (4) 박물관지도부
 - (5) 총무부
2. 종래 문화선전성에서 관장하던 역사박물관에 대한 관리지도사업을 본 위원회에 이관할 것이며 본 위원회는 종래의 북조선고적보존위원회 사업을 1948년 11월 5일이내로 인도할 것이다.
3. 종래 북조선고적보존위원회에서 담당하였던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에 대한 사업은 이를 각 도 및 평양특별시 인민위원회에 이관할 것이며 그의 보존을 엄격히 단속할 것을 내무상에게 책임지운다.
4. 각 국립대학 총장 및 학장은 본 위원회 사업에 참가하는 교수에게 교과 외 사업을 면제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내각수 상 김 일 성
문화선전상 허 정 숙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 (1948.11.1)

제1조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략칭한다)는 조선의 물질문화유물의 수집, 보존, 관리 및 그의 과학적 조사연구와 이에 대한 인식을 보급시키며 역사, 민속학, 미술사 등 각종 박물관 사업을 관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는 내각에 직속하여 사업상 내각 및 수상에게 복종한다.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14명으로서 구성한다.

제4조 위원회 위원장은 내각에서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내각 수상이 이를 임면한다.

제5조 위원회는 각 도에 위원장 1명, 위원 8명의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도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고 략칭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한 지역에 5명 내지 7명의 유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도위원회와 유물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그의 성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임면한다.

제6조 위원회는 매년도의 예산심의 및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며 위원회에 관한 중요사업을 토의결정한다.

위원회는 매년도 사업계획 및 사업총결보고를 청취한다.

제7조 정기위원회는 매년 2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내에 별표(생략)와 같은 기구 및 직원을 둈다.

제9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일체사업을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0조 서기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1조 각 부장은 각각 담당부 사업에 관한 책임을 지고 다음의 각부 사업을 집행한다.

1. 원시사 및 고고학부

- (1) 패총, 동굴, 거석문화유물, 각 시대의 분묘, 주거지 및 석기, 토기, 각종 출토품 등의 발굴조사연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2) 조사보고서작성 및 연구문집출판에 관한 사항

2. 미술사 및 건축사부(생략)

3. 민속학부(생략)

4. 박물관지도부

- (1) 각종 박물관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2) 각종 박물관의 진렬자료의 심사 및 할당분배에 관한 사항
- (3) 각종 박물관의 신축, 증축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총무부(생략)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 개요 (1990)

우리 연구원에서는 북한의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을 입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정부기관인 「민주조선(1990.6.24)」의 법규해설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에 소개하기로 한다.

북한의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1장에서는 동 규정의 목적과 적용대상 등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 목적 : 나라의 명승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리용함으로써 우리 당의 자연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内外에 널리 선전하고, 또한 나라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그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하는데 이 바지 하도록 한다.
- 적용대상 :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
- 관할부처 :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문화보존 총국이 하고, 명승지의 보호관리는 「명승지관리기관」으로서 도·시·군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와 도명승지 및 천연기념물관리소,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한다.
- 문화보존총국은 규정의 요구대로 명승지보호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명승지관리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2) 제2장에서는 「명승지의 조사등록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조사사업 : ①명승지의 조사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전문일군들과 광범한 군중을 발동하여 명승지를 찾아내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기 위함에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②명승지 관리기관은 새로 찾아낸 명승지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심의하고 문화보존총국에 제때에 내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
- 등록사업 : 문화보존총국은 새로 찾은 명승지를 현지에 나가 료해하고 그것이 명승지로서 손색이 없을 때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3) 제3장에서는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보호관리 : ①명승지보호관리를 잘하자면 보호구역을 옳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명승지관리기관은 명승지보호구역을 문화보존총국의 승인을 받아 대상별 특성에 맞게 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보호하며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명승지를 잘 꾸리는 것이 자기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주인답게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④명승지관리기관은 명승지를 과학기술적으로 보호관리하며 인민들의 문화정서적 요구에 맞게 자연환경을 더 잘 조성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이 용 : ①명승지관리기관은 인민들이 명승지를 문화휴식터로 더 잘 리용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꾸리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②명승지관리기관은 명승지에 표식주와 설명문판, 명승지안내략도를 만들어세우고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갖추어 명승지를 찾아오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③명승지관리기관은 명승지를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교양과 그들의 견학, 문화적 정서생활에 널리 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

④명승지관리기관은 명승지참관을 통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우리 당의 자연보호정책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훈련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⑤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명승지보호구역안에 있는 동식물과 지하자원, 시설물을 다른 목적에 절대로利用할 수 없다.

⑥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명승지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명승지의 자연물과 시설물에 해를 끼치거나 환경을 어지럽히는 일을 하지 말데 대한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4) 제4장에서는 「제재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 개요 (1990)

우리 연구원에서는 북한의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을 입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정부기관인 「민주조선(1990. 6. 30.)」의 법규해설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에 소개하기로 한다.

북한의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1장에서는 동 규정의 목적과 적용대상 등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 목 적 : 천연기념물을 잘 보호관리하고 리용함으로써 나라의 자연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그들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한다.
- 적용대상 :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
- 정 의 : 천연기념물은 자연물 가운데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및 풍치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기념물로 보호하게 되어있는 동식물, 화석, 광천, 동굴을 비롯한 자연물을 말한다.
- 관할부처 : 천연기념물보호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문화보존총국이하고, 천연기념물보호관리사업은 「천연기념물관리기관」으로서 도·시·군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도천연기념물관리소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2) 제2장에서는 「천연기념물의 조사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조사사업 : ①천연기념물의 조사등록사업을 잘 하는 것은 천연기념물보호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②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광범한 대중을 발동하여 나라의 자연환경과 자연물들을 조사하여 천연기념물대상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에 대한 조사, 견학, 지질탐사 및 개발 과정에 우리나라의 고유특산종의 식물, 약초, 우리나라의 특산종의 동물, 국제적 보호대상의 동물, 다른 나라에는 전멸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동물, 다른 나라에는 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희귀한 동물 등의 동식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원상대로 두고 천연기념물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땅껍데기의 땅오름과 가라앉기, 학술적으로,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는 동굴, 폭포, 호수, 기묘하게 생긴 바위와 절벽섬, 분화구 등 지리적 대상의 자연물을 보았을 때와 온천, 약수, 진귀한 화석, 광물 등 지질분야의 자연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지방들에서 새로 찾아낸 자연물들에 대한 자료를 대상별로 작성하여 제때에 해당 웃기관에 올려보내야 한다.
- 등록사업 : ①문화보존총국은 지방들에서 새로 찾은 천연기념물대상들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천연기념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문화보존총국은 천연기념물이 자연적 및 기타 요인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을 때 그것을 천연기념물에서 빼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제3장에서는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보호관리 : ①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국가적으로 등록된 천연기념물들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보호하고 그것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②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등에 있는 천연기념물과 광천, 집집승들의 보호관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들은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대상을 잘 알고 그 보호관리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③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천연기념물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구역을 과학적으로 정하며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에 대한 자연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늘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의 특성에 맞게 표식주와 설명문판을 세우며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의 자연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잘하여야 한다.

⑤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천연기념물들의 보호, 증식, 관리 및 리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⑥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천연기념물들의 생태적 특성과 자연환경 등이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 이 용 :
- ① 천연기념물들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과 그들의 견학, 문화정서생활에 널리 리용할 수 있다.
 - ② 천연기념물을 참관,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관, 학할 때 천연기념물관리기관에 천연기념물에 대한 해설강의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참관, 견학 등 여러 계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자연보호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을 잘 갖추어놓고 그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데 응당한 주목을 들려야 한다.

⑤ 천연기념물을 리용하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은 규정의 요구대로 그 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킴으로써 천연기념물을 파괴, 손상시키거나 보호구역을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제4장에는 「제재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개요 (1992)

우리 연구원에서는 북한의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을 입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정부기관지인 「민주조선(1992.1.31/1992.2.4)」의 법규해설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에 소개하기로 한다.

북한의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은 총 4장 19조로 구성되어 있다.

- (1) 제1장에서는 동 규정의 목적과 적용대상 등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 목 적 : 지난 날 우리 인민들이 이룩하여 놓은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역사유적과 유물들을 잘 보존관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계급의식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도록 한다.
 - 적용대상 :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
 - 정 의 : 역사유적과 유물은 지난 날 우리 인민이 창조하여 놓은 원시 유적, 옛성, 옛건물과 건물터, 옛무덤, 옛비석, 옛구축물, 생산도구 및 생활도구, 옛날의 무기와 조형예술품, 민속자료, 민족고전 등을 말한다.
 - 관할부처 : 모든 역사유적과 유물들을 발굴, 수집, 평가, 등록, 복구, 보수, 관리와 그 리용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과 도·시·군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가 한다.
 - 해당 기관들은 역사유적과 유물들의 보존관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복고주의적 경향과 민족허무주의를 없애며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2) 제2장에서는 「역사유적과 유물의 발굴, 평가 및 등록 사업」에 대한 규

정을 두고 있다.

- 발굴사업 : ① 역사유적과 유물의 발굴은 나라의 민족문화발전과 계급교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사유적과 유물을 적극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② 역사유적과 유물들을 다루는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역사유적과 유물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과학연구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역사유적과 유물을 발굴정리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역사유적과 유물들을 발굴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자료를 제때에 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에 내야 한다.
④ 만약 건설공사를 하거나 그밖의 일을 하는 과정에 역사유적과 유물들이 발견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즉시 알리여 전문기관이 발굴수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집된 유물들은 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이 지정하는 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⑥ 역사유적과 유물들을 다루는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우리나라 역사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연구에 자료로 될 수 있는 전설, 민요, 옛그림, 옛문서, 민족고전 등 역사유물들을 수집정리하기 위함에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 평가사업 : ① 역사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평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모든 역사유적과 유물들은 국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만약 평가를 받지 못한 유물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평가를 받을 때까지 잘 관리하여야 한다.
- 등록사업 : ① 역사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등록사업을 바로하는 것은 역사유적과 유물들을 잘 관리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② 역사유적과 유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그것을 빠짐없이 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에 등

록하고 그의 가치를 평가하여 고정재산으로 등록할데 대한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역사유적과 유물의 발굴, 평가 및 등록에 관한 규제는 역사유적과 유물들을 잘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적 담보이다.
-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해당 부문 일군들은 역사유적과 유물의 발굴, 평가, 등록에 관한 요구를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역사유적과 유물들의 보존관리사업에 적극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3) 제3장에서는 「역사유적과 유물의 복구 및 보존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복구사업 : ① 역사유적과 유물들의 복구는 과학적 자료들을 충분히 조사 연구한 기초우에서 원상대로 하여야 한다.
② 이때 국보적인 유적과 유물들의 원상복구는 정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그밖의 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복구는 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아울러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역사유적과 유물을 복구하는데서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보존관리 : ① 역사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하는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을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② 역사유적과 유물 보존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유적과 유물에 대한 보존 및 보호구역을 바로 설정하는 것이다.
③ 역사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보존 및 보호구역은 해당 기관과의 합의하에 도·시·군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가 한다.
④ 도·시·군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들은 해당 기관들과 합의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보존 및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것을 문화휴식터로 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으로 교양할데 대한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⑤ 역사유적과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 사

사회협동단체는 규정의 요구대로 그 관리를 잘하여 마사지거나 변형, 변색,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⑥벽화가 있는 옛무덤 같은 곳을 견학시킬 때에는 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의 승인을 받고 시켜야 한다.

- 처분 : ①역사유적과 유물들의 처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국보적인 유적과 유물들을 처분하려고 할 때에는 정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그밖의 유적과 유물들을 처리하는 것은 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역사유적과 유물들이 있는 지역안에 시설물을 구축하려는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의 합의를 받은 다음 해당 기관의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을 위한 설계를 할 때에는 역사유적과 유물을 보호하는데 주목을 돌리고 하여야 한다.

(4) 제4장에서는 「역사유적과 유물에 대한 감독통제기관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감독통제기관의 임무 : ①역사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감독통제는 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과 해당 감독기관이 한다.
②역사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감독통제기관들은 역사유적과 유물들을 허가없이 옮기거나 없애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민족고전을 비롯한 역사적 문헌자료와 유적, 유물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며 보존구역안을 어지럽히거나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마음대로 옮기며 손상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아울러 보존구역안에서 승인없이 사냥, 식물채집, 광물채취를 하며 흙과 모래를 파거나 나무를 베며 토지를 개간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감독통제기관의 권한 : 역사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감독통제기관은 역사

유적과 유물들의 보존관리 정형을 정상적으로
지도통제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 역사유적
과 유물들을 발견 또는 수집하였을 때 평가하
며, 이 규정을 어기여 역사유적과 유물들을 못
쓰게 만들었거나 보존관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때에 해당한 책임을 지우는 등을 그 권한으로
한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1993.12.10)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세계 만방에 조선을 빛내어온 문명한 민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만년의 오랜 과정을 거쳐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역사는 그 기간에 창조된 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하여지고 있다.

선조들이 이룩하여 놓은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 있고 슬기와 재능이 담겨져 있는 귀중한 재보이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인민들을 민족자주의식과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우리 인민의 지향과 정서에 맞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온겨레의 민족적 대단합을 실현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중요한 요구이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새조국건설의 첫시기부터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은 자주시대의 기본요구와 민족자주노선과 관련된 중대한 정책문제로 내세우고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올바른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그것을 일관하게 관철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역사유적과 유물이 발굴되고 지난 날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수많은 문화재가 복구되어 홀륭히 보전관리되고 있다.

최근에는 단군능이 발굴되어 신화적 인물로 전해지던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민족의 원시조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되찾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민족사를 빛내어 나가는 데서 하나의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민족유산을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사회주의민족문화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7천만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민족적 슬기와 자립심이 넘쳐나 그들의 애국애족의 열정과 통일열기가 비상히 높아졌다.

조선민족의 력사는 5천년을 헤아리며 오늘처럼 민족적 자존심이 높아지고 나라의 주체성이 강화된 때는 일찍이 없었다.

이것은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그에 기초하여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해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민족문화유산을 주체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사회주의적 문화를 민족적 바탕우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 요구이다.

조상대대로 이룩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민족문화유산 가운데에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문화의 민족적 바탕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민족문화를 우리인민의 사회감정과 정서에 맞게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2.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수집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활발히 벌일 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찾아내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과학연구기관에 발굴역량을 그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 문화유적, 유물발굴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민족문화유산발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그것이 전군중적 운동으로 활발히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3. 민족문화유산 가운데에서 손상된 유적, 유물을 복원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 것이다.

손상된 유적, 유물을 복원하는 것은 선조들이 남겨놓은 민족문화의 재보를 풍부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다.

손상된 문화유적과 유물을 전면적으로 조사 장악하고 단군릉을 비롯하여 국보적 의의를 가지는 대상을 먼저 복원하도록 할 것이다.

문화유적, 유물복원사업에서는 전문과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역사주의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할 것이다.

4.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을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을 알뜰히 보전관리하는 것은 민족의 재보를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체계를 더욱 정연하게 세우고 이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물질기술적 보전사업을 개선강화하며 문화유적과 유물을 애호관리하는 사회적 기풍을 확립하도록 할 것이다.

5.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킬 것이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주체적 입장에서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민족문화유산을 연구하는 과학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더 많은 물질적, 정신적 유산을 찾아내고 정확히 고증 평가하며 주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도록 할 것이다.

6. 우리민족의 우수한 민속전통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계속 심화해 나갈 것이다.

조선 전래의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민족적 특성에 맞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민속전통을 체계화하고 시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생활양식이 활짝 꽂피워 나가게 할 것이다.

7.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북돋아 주고 그들이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간직하

게 하는 데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사업을 강화하며 역사박물관과 문화유적의 창건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소개선전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사회주의 애국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도록 할 것이다.

8. 민족문화유산을 왜곡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민족문화유산 왜곡 말살책동을 봉쇄하는 투쟁은 민족적 재보를 지키기 위한 애국애족의 성스러운 투쟁이다.

퇴폐적인 부르조아 문화와 생활양식을 침투시켜 민족문화를 질식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그 사소한 요소도 제때 짓부셔 버릴 것이다.

남조선에서 감행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책동과 문화재약탈책동,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왜곡하고 훼손시키는 반동들의 매국배족적인 행위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벌여 나가도록 할 것이다.

9.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유산보전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새로 제정실시할 것이다.

본 결정의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세울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에 위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1994.4.7)

제1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염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대로 보전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문화유물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주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이다.

문화유물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역사유적과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골같은 역사유물이 속한다.

제3조 문화유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역사유물은 개별적 공민도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유출된 역사유물의 소유권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받도록 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옳바른 문화유물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문화유물이 발굴수집되고 복구개건되었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획적으로 늘여나간다.

제5조 문화유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부문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역사적 사실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화유물을 보호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 문화유물보호관리는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이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문화유물담

- 당 관리체를 실시한다.
- 제7조 국가는 문화유물을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 제8조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에 서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 제9조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분야에서 세계 여러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 제10조 문화유물의 발굴, 수집은 나라의 문화적 재보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의 발굴, 수집사업을 전망 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문화유물발굴은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전문기관만이 한다.
등록된 문화유물의 발굴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12조 문화유물을 발굴하는 기관은 문화유물이 손상되지 않게 과학기술적 으로 발굴하며 발굴이 끝나는 차제로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발굴보고자료는 정해진 기간안에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 내며 발굴 된 문화유물은 해당 문화유물보존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발견하면 문화유물보존지 도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문화유물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 기관 은 즉시 현지를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건설공사 같은 작업을 할 수 없다.
- 제14조 역사유물수집사업은 문화유물보존기관만이 한다.
문화유물보존기관은 역사유물수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에 바친 역사유물에 대하여서는 그 가치에 따라 특별히 보상하여 준

다.

제15조 은행 및 수매 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수매과정에 발견한 역사유물을 문화유물보존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16조 문화유물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것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을 정확히 평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 문화유물은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 일반문화유물로 평가한다.

국보문화유물과 준국보문화유물의 평가는 정무원이, 일반문화유물의 평가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제18조 문화유물을 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을 제때에 평가하여주어야 한다.

제19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평가된 문화유물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일반문화유물은 지방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한다.

제2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 정형을 제때에 기록하고 해당 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을 폐기, 이관하거나 이름을 고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또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제22조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를 잘하는 것은 문화유물의 파손을 미리 막고 원상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문화유물보존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그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문화유물보존관리를 문화유물보존기관과 역사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특수지역안에 있는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제24조 국가는 역사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한다.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25조 역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땅을 일구거나 그안에 시설물을 건설할 수 없다.

제26조 지방행정경제기관과 문화유물보존기관은 역사유적의 표식주, 설명문판 같은 것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 세우며 울타리를 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을 계획적으로 보수, 수복, 소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적 준비가 없이는 문화유물을 보수, 수복, 소독할 수 없다.

제28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온도, 습도를 보장하고 화재, 분실, 파손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9조 역사유적은 박물관을 꾸리거나 문화유물보전과 관련되는 목적에 리용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을 리용하려고 할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역사유적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수하며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승인없이 역사유적의 구조를 변경시킬 수 없다.

제31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물을 해당 시설이 갖추어진 보존고에 정히 보관하며 손상될 수 있는 진귀한 역사유물은 모조품을 만들어 리용하여야 한다.

모조품의 제작승인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촬영하거나 벽화무덤을 참관하려고 할 경우에는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을 보존하는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에 건설대상을 배치하려고 할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역사유물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 수 없다.

전시회를 목적으로 역사유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은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보적 의의가 있는 문화유물의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문화유물의 복구개건

제36조 문화유물의 복구개건은 파손되였거나 없어진 문화유물을 재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기관은 해당 역사적 시기를 대표하고 교양적 의의가 있으며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문화유물을 복구개건하여야 한다.

제37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역사적 사실과 해당 시기의 특성에 맞게 복구개건할 역사유적의 형성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유적형성안의 승인은 정무원이 한다.

제38조 역사유적의 복구개건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비준된 기술과제에 기초하여 역사유적의 복구개건설계를 하여야 한다.

역사유적복구개건설계의 승인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제39조 국가계획기관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유적의 복구개건대상을 기본건설계획 중앙지표로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제40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시공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의 복구개건을 승인된 설계대로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대상은 역사유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41조 역사유적은 승인없이 이설할 수 없다.

부득한 사정으로 역사유적을 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현물이 없는 역사유물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할 수 있다. 역사유물의 복원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만이 한다.

제6장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지도통제

제43조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전국의 문화유물보호관리정형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기관,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안의 문화유물보존관리에 대한 분담을 조직하고 문화유물보존관리계획을 맞물리며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박물관을 꾸릴 수 있다.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실물로 보여줄 수 있는 민속촌도 꾸릴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민속촌을 꾸리려는 경우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

보호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문화유물보호부문의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 수 없다.

제47조 정무원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문화유물보존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문화유물보호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8조 지방행정경제기관과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속에서 문화유물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단일성, 찬란한 문화전통을 옳게 인식시키며 그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문화유물을 애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에 대한 출판보도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 나라의 문화유물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49조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감독통제는 문화유물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한다.

문화유물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문화유물의 보호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0조 문화유물을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1조 문화유물을 도굴하였거나 역사유물을 팔고사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거나 발견한 역사유물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유물을 몰수한다.

제52조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 보존관리, 복구개건질서를 어겨 문화유물보호관리에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부록Ⅱ : 북한소재 문화재 목록*]

○ 국 보 급

번호	명 칭	소 재 지
1	대동문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2	보통문	평양시 중구역 보통문동
3	강서대묘	남포시 강서구역 삼묘리
4	강서중묘	남포시 강서구역 삼묘리
5	강서소묘	남포시 강서구역 삼묘리
6	약수리벽화고분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리
7	연화총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
8	태성리제1호고분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
9	태성리제2호고분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
10	용강대총	남포시 용강군 용강읍 진지동
11	대안리제1호벽화고분	남포시 대안구역 대안동
12	쌍영총	남포시 용강군 용강읍
13	수렵총	평안남도 온천군 화도리
14	감신총	남포시 와우도구역 신영리
15	성총	남포시 와우도구역 신영리
16	점제비	평안남도 온천군 성현리
17	진파리고구려고분	평양시 역포구역 무진리
18	동명왕릉	평양시 역포구역 무진리
19	천왕지신총	평안남도 순천시 북창리
20	요동성총	평안남도 순천시 용봉리
21	박천심원사	평안남도 박천군 상양리

* 최근까지 확인된 북한소재 문화재를 그 가치등급을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도록,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3, 203~209면;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편Ⅱ(증보), 1993, 412~419면 등을 참조).

번호	명 칭	소 재 지
22	보현사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 묘향산
23	보현사8각13층탑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 묘향산
24	해주5층탑	황해남도 해주시
25	해주다라니석당	황해남도 해주시 해청동
26	안악제1호고분	황해남도 안악군 대추리
27	함박뫼(안악제2호고분)	황해남도 안악군 봉성리
28	안악제3호고분	황해남도 안악군 유설리
29	관산리고인돌	황해남도 은율군 관산리
30	학림사5층탑	황해남도 장연군 장연읍
31	성불사	황해북도 봉산군 정방리
32	성불사5층탑	황해북도 봉산군 정방리
33	연탄심원사	황해북도 연탄군 연탄읍
34	개성남대문	개성시 북안동
35	불일사5층탑	개성시 태평동
36	선죽교	개성시 선죽동
37	영통사5층탑	개성시 용홍리
38	영통사서3층탑	개성시 용홍리
39	공민왕릉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40	현화사비	개성시 장풍군 월고리
41	현화사7층탑	개성시 장풍군 월고리
42	가학루	강원도 안변읍
43	석왕사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
44	장연사3층탑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45	금장암사자탑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46	묘길상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47	묘길상석등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48	진홍왕순수비 ① 황초령비 ② 마운령비	함흥본궁 함경남도 장진군 황초령 함경남도 이원군 마운령
49	경성남문	함경북도 경성군 승암노동자구
50	수강루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읍

○ 보물 급

번호	명 칭	소 재 지
1	평양종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2	승인전	평양시 중구역 서문동
3	오순정	평양시 중구역 만수동
4	칠성문	평양시 모란봉구역 경상동
5	홍복사6각7층탑	평양시 모란봉구역
6	영명사8각석불감	평양시 모란봉구역 영명사터
7	중흥사당간지주	평양시 모란봉구역 인홍2동
8	안국사	평안남도 평성시 안국리
9	자복사5층탑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읍
10	의주남문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
11	통군정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
12	용천다라니석당	평안북도 피현군 성동리
13	용천서문밖석당	평안북도 피현군 성동리
14	용천구읍리 석수	평안북도 피현군 지하리
15	장경사5층탑	평안북도 괴산군
16	영변남문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리
17	천주사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리
18	첨운사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읍
19	보현사9층탑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
20	해주석빙고	황해남도 해주시 옥계동
21	해주9층탑	황해남도 해주시 해청동
22	신풍사5층탑	황해남도 해주시 신풍리
23	신풍사무자비	황해남도 해주시 신풍리
24	소현서원	황해남도 벽성군 석담리
25	자혜사5층탑	황해남도 신천군 서원리
26	자혜사석등	황해남도 신천군 서원리

번호	명 칭	소 재 지
27	구엽사	황해남도 안악군
28	월정사	황해남도 안악군 월정리
29	관산리고인돌	황해남도 은율군 관산리
30	연복사종	개성시 북안동 남대문루
31	홍국사탑	개성역사박물관
32	홍국사석등	개성역사박물관
33	관음사	개성시 산성리
34	화장사사리탑	개성시 용흥리
35	영통사동3층탑	개성시 용흥리
36	영통사대각국사비	개성시 용흥리
37	영통사당간지주	개성시 용흥리
38	현화사당간지주	개성시 장풍군 월고리
39	탑동3층탑	개성시 판문군 흥왕리
40	장안사터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41	삼불암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42	서산대사비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43	정양사석등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44	선화당	함흥시 반용구 만세동
45	함흥본궁	함흥시 사포구역
46	함흥향교	함경남도 금야군 금야읍
47	여진문자비	함경남도 신창군 남흥리
48	복흥사7층탑	함경남도 이원군 청산리
49	정북사	함경북도 경성군 승암노동자구
50	길주향교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51	회령향교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52	쾌궁정	양강도 혜산시
53	중흥사	양강도 삼수군 관평리

○ 사적

번호	명 청	소 재 지
1	평양성	평양시
2	평양성외성	평양시
3	평양성내성	평양시
4	평양시북성	평양시
5	연광정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6	송영전	평양시 중구역 종로동
7	을밀대	평양시 중구역 금수산
8	현무문	평양시 중구역 금수산
9	영명사터	평양시 모란봉구역
10	부벽루	평양시 중구역 금수산
11	전금문	평양시 중구역 금수산
12	청류정	평양시 중구역 금수산
13	안학궁터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
14	대성산성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산
15	청암리토성	평양시 대성구역 청암동
16	금강사터	평양시 대성구역 청암동
17	대성산부근 고구려고분	평양시 대성구역 천마총
18	낙랑리토성	평양시 낙랑구역 상성동
19	미림리원시유적	평양시 사동구역 미림리
20	금탄리원시유적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리
21	강서삼묘리고분	남포시 강서구역 삼묘리
22	석천고인돌군	남포시 용강군 용강읍 석천리
23	황룡산성	평안남도 용강군 옥도리 일대
24	궁산원시유적	평안남도 온천군 운하리
25	어을동토성	평안남도 온천군 성현리
26	한왕묘	평안남도 평성시 한왕리
27	자모산성	평안남도 평성시 어중리 자모산

번호	명 청	소 재 지
28	정진사	평안남도 성천군 향기리
29	의주읍성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
30	임천성	평안북도 의주군 춘산리
31	고려장성(천리장성)	평안북도 의주군 금광리
32	백마산성	평안북도 피현군 성하리
33	구주성	평안북도 구성군 구성읍
34	정주성	평안북도 정주군 정주읍
35	당산원시유적	평안북도 정주군 대산리
36	철옹성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읍
37	농오산성	평안북도 태천군 용상리
38	용호리고분	평안북도 운산군 용호리 구봉산
39	월암리고인돌군	황해남도 백천군 용동리
40	장수산성	황해남도 재령군 장수산
41	태백산성	황해북도 평산군 산성리
42	지탑리유적	황해북도 봉산군 지탑리
43	지탑리토성	황해북도 봉산군 지탑리
44	휴류산성	황해북도 봉산군 록과산
45	연탄고인돌군	황해북도 연탄군 연탄읍 중립동
46	개성나성	개성시
47	반월성	개성시
48	만월대	개성시 송악산 고려 궁궐터
49	고려담성대	개성시 송악산 만월대 서쪽 궁궐터
50	개성성균관	개성시 선죽동
51	송양서원	개성시 선죽동
52	대홍산성	개성시 산성리
53	현릉	개성시 개풍군 해산리
54	칠릉	개성시 개풍군 해산리
55	용성리고분군	강원도 안면군 용성리

번호	명 칭	소 재 지
56	지릉	강원도 안변군 수상리
57	지하리고인돌군	강원도 판교군 지하리
58	삼일포리고분군	강원도 고성군 삼일포리
59	백운산성	함경남도 영광군 봉흥리
60	부상리고분군	함경남도 흥원군 부상리
61	청해토성	함경남도 신창군 토성리
62	농포리원시유적	함경남도 청진시 송평구역 농포동
63	경성읍성	함경북도 경성군 승암노동자구
64	하고천고분군	함경북도 화대군 하고천유역
65	무산범의구석원시유적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호곡동
66	부거리고분군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67	나진초도원시유적	함경북도 나진시 초도
68	운두산성	함경북도 유선군 유선읍
69	회령오동원시유적	함경북도 회령군 오동리
70	굴포리원시유적	함경북도 선봉군 굴포리 서포항동
71	공귀리원시유적	자강도 강계시 공귀리
72	위원고성과 읍성	자강도 위원군
73	세검정	자강도 만포시 만포읍

○ 명승지

번호	명 청	소 재 지
1	모란봉	평양시 중구역 금수산
2	약산동대	평안북도 연변군 영변읍
3	묘향산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
4	동룡굴	평안북도 구장군 소민리
5	백령대굴	평안북도 구장군 대풍리
6	구월산	황해남도 안악, 신천, 삼천, 운율, 장연군
7	장수산	황해남도 재령군
8	석담구곡	황해남도 벽성군
9	몽금포	황해남도 용연군 장산곶
10	박연폭포	개성시 산성리
11	삼방협	강원도 삼방협
12	금강산	강원도 통천군 고성리, 금강군, 회양군
13	총석정	강원도 통천군
14	시중호	강원도 통천군 강동리
15	칠보산	함경북도 영천군
16	주을온천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리
17	백두산	양강도 삼지연군

○ 천연기념물

번호	명칭	소재지
		평양특별시
1	중구역 화석림	중구역
2	만경대 백양나무	만경대구역
3	무진리 소나무 무리	력포구역
4	릉라도 수양버들	중구역 릉라도
5	옥류 능수버들	중구역 경상동
6	대성산 두충나무	대성구역 대성산
7	대성산 수삼나무	대성구역 대성산
8	대성산 향오동나무	대성구역 대성산
9	대성산 목란	대성구역 대서산
10	문수봉 이깔나무	동대원구역 문수봉
11	고령산 평탄면	상원군 로동리
		남포직할시
12	강선 뾰뿌라나무	천리마구역 상봉동
13	대안 회화나무	천리마구역 강철동
14	수산리 약밤나무	강서구역 수산리
15	우산장 느티나무	항구구역 우산리의 우산장
16	룡강 느티나무	룡강군 룡호리
		개성직할시
17	송악산 클락새	개성시
18	개성 백송	개풍군 연강리
19	개풍 학	개성지구 개풍군
20	개성 산당화	개풍군 신선리마을
21	개풍 모파나무	개풍군 풍덕리
22	삼거리 느티나무	개성시 삼거리
23	개풍 은행나무	개풍군 개풍읍 인근
24	만월대 느티나무	개성시 송악동 만월대

번호	명 칭	소 재 지
25	장풍 느티나무	장풍군 대덕산리의 온신마을
26	개성 회화나무	개성시 내성동
27	판문 탱자나무	판문군 동창리
28	성균관 은행나무	개성시 부산동 성균관 마당
29	개성 자목련	개성시 부산동 성균관 근처
30	성균관 느티나무	개성시 부산동 성균관 마당
31	판문 흰두루미 살이터	판문군 동창리 · 대룡리 · 림한리 등 사천강 하류일대
32	박연폭포	개성시 산성리
		평안남도
33	평안남도 너화	안주군 · 평원군
34	환송리 청서	순천군
35	자모산 동물보호구	순천군 자모산
36	맹산 만주 흑송림	맹산군 당포리(구명)
37	룡강 떡갈나무	룡강군 룡강읍
38	함종 약밤나무	증산군 함종리
39	승백루 갈새	안주군 안주읍
40	금성리 검은황새	덕천군 금성리
41	북창 느삼나무 군락	북창군 룡포리
42	숙천 주염나무	숙천군 신풍리
43	안국사 은행나무	평성시 봉학동
44	률화 소나무	평성시 룰화리
45	자산 은행나무	평성시 자산리
46	평원훈련정 은행나무	평원군 평원읍
47	은정 배나무	문덕군 마산리
48	성천 가지부처손 군락	성천군 성천읍
49	양덕 금수목	양덕군 운창리
50	룡포리 가느잎소나무림	북창군 룡포리
51	대홍 수달	대홍군 대동강상류 일대
52	따오기	온천군과 증산군 일대

번호	명 칭	소 재 지
53	덕도 바다새 번식지	온천군 금성리 앞바다
54	룡운리백로왜가리번식지	개천군 룡운리
55	룡원 동굴	개천군 룡원 로동자구
56	월포리 하성단구	평성시 월포리
		평안북도
57	선천 랍도 바다새보호구	선천군 운종리
58	철산 책도 바다새보호구	철산군 책도
59	동림 들메나무	동림군 신곡 로동자구
60	쑥섬 겸은낮저어새	정주군 보산리
61	료하리 나도박달	대관군 료하리
62	묘향산 청조	묘향산
63	상원암 은행나무	묘향산의 상원암
64	보산 배나무	정주군 보산리
65	향산 비술나무	향산군 태평리
66	묘향산 들메나무	묘향산의 보현사 인근
67	선주 느티나무	철산군 선주리
68	묘향산 산뽕나무	묘향산 보현사 앞
69	학당 옻나무 무리	태천군 학당리
70	묘향산 소나무	묘향산 상운동 골짜기
71	정주 은행나무	정주군 고읍역 인근
72	좌리 전나무	삭주군 좌리
73	장송소나무 바람막이숲	철산군 장송
74	묘향산 두봉화 무리	묘향산
75	묘향산 날다라미	묘향산
76	목이도노랑부리백로번식지	선천군 앞바다 목이도
77	재비둘기 번식지	의주군 의주읍
78	룡골 백로왜가리번식지	동찬군 룡골부락 주변
79	참차도 바다새 번식지	철산군 앞바다
80	철산 조개 살이터	철산군 앞바다
81	비단섬 코끼리바위	룡천군 비단섬 로동자구

번호	명 칭	소 재 지
82	막대바위	염주군 남압리
83	동림폭포	동림군 고군영리
84	거북바위	녕변군 냉변읍
85	상초동굴	구장군 상초리
86	백령대굴	구장군 대풍리
87	삭주폭포	향산군 향암리
88	룡연폭포	향산군 향암리
89	천주석	향산군 향암리
90	천신풍포	향산군 향암리
		자강도
91	창덕리 나도박달	전천군 창덕리
92	전천 전나무	전천군 와운리
93	오가산 식물보호구	화평군, 탕강도 김형직군
94	양토 비술나무	초산군 양토리
95	시중긴방울가문비나무무리	시중군 천장리
96	오가산 신갈나무	화평군 가림리
97	오가산 피나무	화평군 가림리
98	오가산 잣나무	화평군 가림리
99	오가산 주목	화평군 가림리
100	전천 돌부채 군락	전천군 무평리와 성간군 서남부 경계
101	강계 은행나무	강계시 북문동
102	룡대 만지송	고풍군 룡대리
103	성하 왕절광나무	성간군 성간읍
104	성간 뾰뿌라나무	성간군 성간읍
105	가산령 잣나무	화평군 가림리
106	오가산 쉼터 피나무	오가산 영마루
107	오수덕 잣나무림	증강군 오수리
108	룡림 큰곰	룡림군 후지리
109	노랑홍모시범나비	랑림군 련화산
110	오가산 원앙새 살이터	화평군 가림천과 그 유역

번호	명 칭	소 재 지
111	홍주 닭	강계시 홍주동
112	와갈봉 조선범	룡립군·랑립군 일대
113	룡수폭포	시중군 천장리
114	성하감입사행(굽은 강)	성간군 서하 로동자구
		황해남도
115	황해남도 학	황해남도 일원
116	황해남도 황새	벽성군·평천군·배천군·연안군
117	방현리 백로	배천군 방현리
118	장산곶 식물보호구	용연군 장산리
119	강호 염주나무	배천군 강호리
120	배천 은행나무	배천군 배천읍
121	해주 락우송	해주시 옥계동
122	신원 은행나무	신원군 계남리
123	해주 벽오동나무	해주시 부용동
124	송화 삼광향나무	송화군 송화읍
125	온률 황목련	온률군 온률읍
126	평천 느티나무	평천군 평천읍
127	신원 쌍동이느티나무	신원군 화석리
128	연안 은행나무	연안군 연안읍
129	안악 느티나무	안악군 안악읍
130	석담 느티나무	벽성군 석담리
131	옹진 쪽가래나무	옹진군 송월리
132	옹진 이팝나무	옹진군 립석리
133	과일군 은행나무	과일군 과일읍
134	옹진 참김	옹진군 마산반도 동남쪽 시곶 앞바다
135	해주 설송	해주시 구제동
136	강호 능소화	배천군 강호리
137	장연 조선소	장연군 백촌리·금사리·광천리
138	배천 재두루미 살이터	배천군 역구도리 일대
139	사현리 왜가리 번식지	벽성군 사현리

번호	명 칭	소 재 지
140	강령 흰두루미 살이터	강령군 동포리
141	홍현리 백로 살이터	배천군 홍현리
142	몽금포 코끼리바위	통연군 몽금포리
143	장수산 열두굽이	재령군 서림리
144	몽금포 사구	통연군 몽금포리
145	오차바위	통연군 몽금포리
		황해북도
146	답동산 식물보호구	서흥군 봉하리
147	평산 염나무	평산군 산성리
148	황주 련꽃	황주군 황주읍
149	삼전 향나무	황주군 삼전리
150	평산 대추나무	평산군 봉탄리
151	답동산 가침박달 무리	서흥군 봉하리 답동산
152	신계 황목련 무리	신계군 음정리 어름산기슭
153	입문 소나무	곡산군 곡산읍 동산리
154	서흥 가래나무	서흥군 화봉리
155	봉진 느티나무	황주군 삼훈리
156	동산리 소나무	곡산군 동산리 구로동
157	신계 은행나무	신계군 침교리 죽동마을
158	구락리 자라 살이터	신계군 구락리 · 침교리 부근 폐성강 일대
159	구락리어름치췌리알쓸이터	신계군 구락리 부근 폐성강 일대
160	남강 쌍절벽	연산군 대룡리
161	달해산성 절벽	신평군 생양리
		강원도
162	삼방 왕제비꽃	고산군 삼방협
163	석현 염나무	문천군 석천리
164	통천알섬 바다새보호구	통천군
165	금강산 금강국수나무	금강군 내강리
166	금강산 금강초롱	금강산 묘길상 부근
167	문수리 소나무	안변군 문수리

번호	명 칭	소 재 지
168	원산 구상나무	원산시 송흥동
169	성북 느티나무	이천군 성북리
170	원산 칠엽나무	원산시 송천동
171	금수리 소나무	법동군 금수리
172	금강 전나무	금강군 내강리
173	안변 느티나무	안변군 안변읍
174	이천 영웅은행나무	이천군 이천읍
175	원산 츄립프나무	원산시 송천동
176	가재울 은행나무	철원군 정동리 가재울 골짜기
177	두문동 은행나무	철원군 저탄리 두문동
178	위남리 소나무	고산군 위남리
179	원삼 금솔	원산시 송청동
180	건자리 소나무	번동군 건자리
181	판교 전나무	판교군 룽포리
182	원산 감나무	원산시 영삼리
183	창도 늘어진소나무	창도군 장현리
184	추애산 조선榧	고산군 · 세포군 · 법동군 산지대
185	천아포 고니 살이터	통천군 하수리
186	룡홍리 백로 왜가리번식지	판교군 룽호리 신평부락
187	대도 백로 왜가리번식지	원산시 통천리 앞바다
188	명사십리	원산시 통천리
189	시중호	고성군 송전리
190	국도	통천군 자산리 앞바다
191	총석정	통천군 통천읍
192	금란굴	통천군 금란리
193	천선대	고성군 온정리
194	금강산 닭알바위	고성군 온정리
195	삼일포	고성군 삼일포리
196	상팔담	고성군 온정리
197	삼선암	고성군 온정리

번호	명 칭	소 재 지
198	조양포	고성군 온정리
199	비봉포	고성군 온정리
200	십이포	고성군 온정리
201	귀면암	고성군 온정리
202	구룡폭포	고성군 온정리
203	해금강 솔섬	고성군 해금강리
204	해금강문	고성군 해금강리
205	면경대	금강군 내강리
206	삼방협곡	세포군 삼방리
		함경남도
207	함흥 본궁 반송	함흥시 흥남구역 본궁
208	조상사과나무	북청군 통전리
209	곡구리 백리향 군락	리원군 곡구리
210	리원 팽나무	리원군 곡구리 속새산
211	두연못 련꽃	단천시 두연리
212	단천 만지송	단천시 달전리 김치골
213	룡전 사과나무	북청군 통전리
214	동홍산 은행나무	함흥시 동홍산구역 동홍동
215	함흥 반송	함흥시 사포구역 소나무동
216	홍남 팽나무	함흥시 홍남구역 풍홍동
217	호남 향나무	신포시 호남리
218	속후 회화나무	신포시 중흥리
219	신흥 엄나무	신흥군 신흥읍
220	정평 박태기잎나무	정평군 구창리
221	금야 은행나무	금야군 동흥리
222	가진 소나무	금야군 가진 로동자구
223	청백 향나무	금야군 청백리
224	성남 소나무	고원군 성남리
225	대섬 신의대 군락	홍원군 호남리 앞바다 대섬
226	중동리 소나무	덕성군 중동리

번호	명 칭	소 재 지
227	배골 소나무	덕성군 중동리
228	홍남 구경대	함흥시 홍남구역 풍홍동
229	금야 겨울새 살이터	금야군 해중리 일대
230	정평 백로 살이터	정평군 선덕리 광포 기슭
231	사철오리	정평군 구읍리
232	속사리 강명태 알쓸이터	장진군 속사리의 장진강 기슭
233	장진 정장어 알쓸이터	장진군 장진읍~황초리 장진강 웃녘
234	서목리 왜가리 번식지	장진군 서목리
235	천불산 사향노루	영광군 천불산리
236	단천 산양	단천시 리파리의 리파산 일대
237	백악 폭포	영광군 천불산리
238	광포	정평군
239	홍원 솔섬	홍원군 홍원읍
240	청도 해식굴	홍원군 홍원읍
241	운포동굴	홍원군 운포 로동자구
242	리원 구석	리원군 라흥 로동자구
243	리원 학사대	리원군 학사대리
		함경북도
244	운만대 신의대 군락	화대군 목진리
245	양정리 제3기 동물화석층	명천군 양정리
246	개심사 약밤나무	명천군
247	함진리 제3기 동물화석층	명천군 함진리
248	관모봉 식물보호구	은성군
249	동관리 홍적기 동물화석층	은성군 동관리
250	라진 산벚나무	라진시
251	웅기군 알섬 바다새보호구	선봉군 알섬
252	서수라 산벚나무	선봉군 서수라리
253	왕재산 참나무	온성군 왕재산리
254	덕인 참나무	김책시 덕인리
255	관모봉 장군풀	연산군과 경성군 사이의 관모봉 일대
256	포중 소나무	명천군 포중리

번호	명칭	소재지
257	회령 밤나무	회령군 성북리 정주평마을
258	고진 소나무	명천군 포하리
259	명천 곱향나무 무리	명천군 사리
260	함진 소나무	화성군 함진리
261	학동 소나무	김책시 학동리
262	우암 산벚나무 무리	선봉군 우암리
263	명천 오동나무	명천군 보촌리
264	화성 전나무 무리	화성군 고성리
265	록야리 사향노루	은덕군 록야리 일대 산지대
266	마양 흰죽제비	무산군 마양 로동자구
267	덕인리 왜가리 번식지	김책시 덕인리
268	관모봉 큰곰	연사군 삼포리 관모봉 일대
269	우암 물개	선봉군 우암리 앞바다
270	신양 수달	연사군 신양 로동자구
271	보촌 조개 살이터	명천군 보촌리 앞바다
272	해칠보 달문	화대군 목진리
273	해칠보 무지개바위	명천군 보촌리
274	해칠보 솔섬	명천군 보촌리
275	금강봉과 금강굴	명천군 보촌리
276	로적봉	명천군 보촌리
277	명간 선바위	화성군 립석리
278	무계호	어랑군 무계리
279	장연호	어랑군 융평리
280	천상수 아흔아홉굽이	연사군 삼포리
		량강도
281	보천보 검은돈	보천군 대평 로동자구
282	풍산 개	풍산군 광덕리
283	차일봉북수백산식물보호구	량강도 풍서군, 함경남도 부전군
284	백두산 식물보호구	보천군
285	백암리 부채붓꽃 군락	부전군 백암리

번호	명 칭	소 재 지
286	후창 조릿대 군락	후창군 군내리
287	후창 느티나무	후창군 무창리
288	갑산 비술나무	갑산군 송암리
289	연지봉 소나무	삼지연군 신무성
290	북포태산 장군풀	삼지연군 포태
291	백암 좀콜담초 군락	백암군 상담리
292	남포태산 장군풀	삼지연군 포태
293	리명수 채양버들	삼지연군 리명수 로동자구
294	누른돈	백암군 일대
295	백암 우는토끼	백암군 일부 산지대
296	백암 검은돈	백암군 박천 일대
297	백암 사슴	백암군 상담리
298	대홍단 메닭	대홍단군 일대
299	백두산 조선범	대홍단군과 삼지연군 일대
300	대홍단 산양	대홍단군 대로은산 일대
301	신파닭	김정숙군 장항리
302	삼지연 검은돈	삼지연군 삼지연읍 베개봉 일대
303	삼지연 메닭	삼지연군 일대
304	연지 노랑나비	대홍단군 일대
305	신무성 세가닥딱따구리	삼지연군 간삼봉 인근
306	합수 로룡룡 살이터	백암군 간장늪
307	남사 사루기 알쓸이터	후창군 남사의 후주천 웃녁
308	누렁이	삼지연군 증암산과 곰노는산
309	삼지연 사슴	삼지연군과 대홍단군의 일부 지역
310	련암산 분화구	보천군 대평 로동자구
311	리명수 폭포	삼지연군 리명수 로동자구
312	삼지연	삼지연군 삼지연읍
313	백두산천지	삼지연군 신무성 로동자구
314	간장늪	백암군 백암 로동자구

북한법제분석 95-1 北韓의 文化財保護關係法制

1995년 7월 25일 印刷

1995년 7월 31일 發行

發行人 白 南 辰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500 원

